

개발과 이슈

제3차 개발자원총회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함의 분석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제3차 개발자원총회가 개최되었으며, 본 회의의 결과문서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이 채택되었다. 총 134항으로 구성된 AAAA는 총론에서는 Post-2015 개발자원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A Global Framework for Financing Development Post-2015)를, 본문에서는 7개 분야별 행동분야를, 그리고 종장에서는 데이터,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를 기술하였다. 7개 분야별 행동분야로는 ◇국내공공자원(Domestic public resources), ◇국내외 민간 기업 및 자원(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business and finance),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 동력으로서의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부채 및 부채지속가능성(Debt and debt sustainability), ◇시스템이슈대응(Addressing systemic issues), ◇과학, 기술, 혁신 및 역량 강화(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apacity-building) 등이 있다. AAAA는 기술촉진메커니즘, 인프라 포럼, 아디스조세이니셔티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민간자원 동원 관련 과제, 개발정책정합성 제고 문제, 통계 및 데이터 투명성 고려 등의 과제도 남겨두었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을 위한 시사점으로 개도국의 조세역량강화 사업 추진, 기술촉진메커니즘 관련 협력 강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확대 및 발전, AAAA 및 SDGs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 수립 등을 제안한다.

연구개발팀 박수영 · 오수현

1. 서론	02
2. 개발재원 논의의 흐름	02
3.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분석	08
4. 우리 원조에 대한 시사점	14
첨부자료.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17

1. 서론

지난 2015년 7월 16일 나흘간에 걸친 본회의가 종료되며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이을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이하 AAAA)이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결과물로 공식 채택되었다. 행동계획은 총론격인 ‘지구적 프레임워크’, 본문격인 7개 분야별 이행사항을 담은 ‘행동분야’, 행동계획에 대한 모니터링방안을 담은 ‘데이터, 모니터링과 후속조치’의 총 3개 부분으로 나뉘어 134개 조항으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행동계획은 2015년 9월 확정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으로서의 성격을 띠며, 향후 15년간 개도국과 선진국들이 SDGs달성에 필요한 자원마련을 위해 협력해야할 분야들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이에 기반한 2030년까지의 심도 있는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행동계획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재원의 정의와 흐름을 간단히 짚어보고, 행동계획의 각 영역별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원조와 개발협력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략을 제안토록 한다.

2. 개발재원 논의의 흐름

2.1. 몬테레이에서 아디스아바바까지

개발재원의 정의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자금으로 본다면, 2000년대 전까지 개발재원문제는 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증액문제가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개최된 제 54차 UN총회에서 개발재원논의를 위한 행사 개최가 결정되었고,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세디요 전 멕시코 대통령을 고

위급패널 의장으로 선임한다. 세디요는 2001년 고위급패널보고서 (Zedillo's Recommendation of High-Level Panel)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2년 몬테레이에서 제1차 UN개발재원 회의가 개최된다.

2002년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제1차 개발재원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가 개최되었고, 동 회의의 결과물로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가 채택되었다. 이 회의는 개발재원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회의로 회의결과 채택된 몬테레이 컨센서스는 개발재원문제를 중요한 전지구적과제로 대두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몬테레이 컨센서스는 총 7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AAAA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 개발재원문제는 ◇개도국 국내재원 동원, ◇국제개발재원동원, ◇국제무역, ◇개발을 위한 국제 재정 및 기술협력 증대, ◇외채, ◇제도 문제 등 6가지 영역에서의 활동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 컨센서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 협력문제가 마지막에 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몬테레이 컨센서스는 개발재원의 핵심으로 개도국 국내재원 조달을 다뤘다. 먼저 개발의 책임은 각 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개도국들이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등 민간국제재원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하여 고용과 경제성장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로는 개발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개도국 무역역량 강화를 위해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하고, 무역장벽 완화 조치들을 나열했다. 네 번째로는 금융 및 기술부문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공적재원으로서의 ODA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으며, 각 공여국들이 ODA/GNI 비율 0.7% 달성이라는 증액 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섯 번째로는 외채문제를 다루었다. 개도국의 고채무 문제에 대해 채무탕감 또는 재조정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는 개도국의 무역참여율 확대 및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제제도 개혁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통화, 금융, 무역 체제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국제경제 의사결정 및 규범형성과정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각 영역별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다루었다.

몬테레이 회의는 개발재원 증액을 위한 정치적 결의를 다지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비판도 크다(정지원, 정지선; 2011). 즉, 방대한 부문에 있어서 제안과 권고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실행방안이나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선언적인 요소가 더 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어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후속회의(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가 2008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되었으며, 몬테레이 컨센서스 6개 분야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식량위기 및 기후변

화 등 새롭게 대두된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국내재원동원을 위해 개도국 조세제도 개혁과 불법자금흐름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자금 동원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ODA의 역할이 제기되었다.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또한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강제성이 없으며 구체적이지 않은 합의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2. 개발재원의 유형과 논의의 변화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 선언 및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서는 여러 유형의 개발재원에 대한 협력방안들을 기술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재원(Development Finance)에 대해 합의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포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재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환경 개발을 위해 동원 가능한 재원이 무엇이며, 이러한 재원의 조달 및 활용을 위해 수행해야 할 노력들을 논의하고 있다.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와는 달리 Post-2015 개발의제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구분 없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데 있다. 논리적으로 각국이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은 저성장 및 제도적 문제, 역량 부족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필요 재원의 자체적인 충당이 어려우며 이 경우 해외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서의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 투자 및 이주 송금 등의 이슈는 국내와 국외 재원 모두를 아우르는 주요 개발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발재원은 재원의 출처 상으로는 개도국의 국내재원¹⁾과 국외재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민간에서 모두 모집이 가능하다. 즉, 재원 모집 장소와 재원의 공공성여부를 결합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개발재원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표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국내 공공 개발 재원의 대표적 유형은 조세 수입이며, 국외 공공 재원은 ODA와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이하 OOF)과 같은 공여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자금을 들 수 있다. 한편, 국내 민간 재원은 대표적으로 저축을 들 수 있으며, 국외 민간 재원으로는 송금, 해외직접투자, 자선재단 기부금 등이 있을 것이다. 즉, 개도국 정부는 원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민간은행을 통한 차입, 증권시장, 해외투자유치 등 국내외의 다양한 자금원을 활용하여 개발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1) 본 연구보고서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국내재원은 개도국 내 국내재원을 의미한다.

표 1. 개발 재원의 유형

	국내	국외
공 공	조 세	공적개발원조 (ODA); 기타 공적 자금(OOF) 등
민 간	저 축	송금, 해외직접투자(FDI), 자선재단 기부금 등

혁신적 개발 재원(Innovative Finance for Development)

출처: 저자 작성

한편, 혁신적 개발재원(Innovative Finance for Development)에 대한 논의도 있다. 혁신적 개발 재원이란 ODA와 같은 전통적인 개발재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다른 방식의 개발자금 조달 수단 또는 활동이 결합된 메커니즘으로 정의될 수 있다(정지원, 정지선 2011). OECD(2009)는 혁신적 개발재원으로 민간과 공적 재원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자금조달법, 새로운 인센티브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가장 대표적인 혁신적 개발재원은 항공권연대기금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항공권연대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선 항공권에는 좌석등급별로 1-4유로, 국제선은 10-40유로를 차등부과하고 개도국 지원에 활용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을 보건사업에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재원조달 수단에 따라서 개발재원을 위해 활용되는 복권, 탄소기금, 은닉자산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방법, 경기상쇄형 차관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발재원의 유형별 논의사항은 앞서 설명된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 담겨있다. 아래 표에 잘 나타나 있듯이 두 문서 모두 개도국 국내 공적 재원인 조세, 개도국 내의 민간자금 조달, ODA와 같은 국제 공적 재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뒤로는 재원조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이슈가 논의된다. ‘개발동력으로서의 국제 무역(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은 동일한 제목으로 두 문서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 그 뒤이어 외채 문제와 국제 시스템의 구조개별 문제가 등장한다.

다만 구성에서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는데, 몬테레이에서는 본문의 A와 B가 국내재원과 국제재원으로 분리된 반면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서는 보다 구체화 되어, A는 국내공적재원, B는 국내 및 국제 민간기업과 재원으로 분류가 보다 세분화되었다. 이는 조세제도 개혁 및 불법자금 흐름방지를 통한 국내 공적 재원 마련을 강조하였으며,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내용이 ‘D. 개발을 위한 국제 자금 및 기술 협력 증대(Increasing internation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에서 기술된 데 반해, 아디스

아바바 행동계획에서는 ‘C.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개발협력의 범위를 자금 및 기술에 한정 짓지 않았으며 국제 공적 재원으로서의 ODA에 대한 역할 및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한편, 역량개발 부분은 별도로 과학, 기술, 혁신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G에서 통합되어 서술되었다.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총조항 수가 몬테레이 컨센서스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 증가되어 2002년 몬테레이 회의 이후의 복잡해지고 다변화 된 개발 이슈들을 담고 있다.

표 2.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선언 및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비교

	몬테레이 컨센서스 (총 73항)	도하 선언 (총 90항)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총 134항)
총장	I.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a global response (1~9)	Introduction: Reaffirming the goals and commitments of the Monterrey Consensus (1~7)	I. A global framework for financing development post-2015(1~19)
본문	II. Leading actions A. Mobilizing domestic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10~19) B. Mobilizing international resources for develop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ther private flows (20~25) C. 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26~38) D. Increasing internation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39~46) E. External Debt (47~51) F. Addressing systemic issues: enhancing the coherence and consistenc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inancial and trading systems in support of development (52~67)	• Mobilizing domestic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8~22) • Mobilizing international resources for develop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ther private flows (23~29) • 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30~39) • Increasing internation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40~55) • External Debt (56~67) • Addressing systemic issues: enhancing the coherence and consistenc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inancial and trading systems in support of development (68~79) • Other new challenges and emerging issues (80~86)	II. Action Areas A. Domestic public resources(20~34) B.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business and finance (35~49) 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50~78) D. 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79~92) E. Debt and debt sustainability (93~102) F. Addressing systemic issues (103~113) G.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apacity-building (114~124)
종장	III. Staying engaged (68~73)	Staying engaged (87~90)	III. Data, monitoring and follow-up (125~134)

출처: 저자 작성

또한,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결과 문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의 빈도 수 변화를 통하여 개발 담론 및 개발 재원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3은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주요 단어의 빈도수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경우,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의 성격을 갖는 만큼 ‘지속 가능한(sustainable)’이란 단어가 17회에서 154회로 약 9배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본문 내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과 같이 ‘빈곤층을 포용’한다는 의미의 단어인 ‘포용적인/포용(inclusive/inclusion)’이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 약 4회 언급된 반면, AAAA에서는 약 41회 언급되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개발 자원 마련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및 강조를 엿볼 수 있는 용어들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investment)’라는 용어는 몬테레이와 AAAA 비교 각각 22회, 75회 언급되었으며, ‘혁신(innovation)’은 앞서 몬테레이에서는 단 1회 서술된 반면, 이번 AAAA에서는 33회 언급되었다는 것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우선순위에 있어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중점은 경제체제전환국(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에 있었던 반면 AAAA에서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내륙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소규모도서국(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ies)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는 것 역시 단어 사용의 빈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단어 분석

(unit: 빈도수)

번호	단어	몬테레이 컨센서스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1	지속가능한 (sustainable)	17	154
2	포용적인 / 포용 (inclusive / inclusion)	3 / 1	29 / 12
3	여성의 임파워먼트 (women's empowerment)	0	7
4	투자 (investment)	22	75
5	자원 마련 (financing)	32	63
6	혁신 (innovation)	1	33
7	지식 공유 (knowledge-sharing)	0	6
8	내륙국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6	18
9	소규모도서국 (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ies)	8	31
10	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17	58
11	경제체제전환국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27	0

출처 : 저자 작성

3.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 분석

지난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개최된 제3차 UN개발재원총회는 8차에 거친 본회의와 6회의 라운드테이블, 200여개의 부대행사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종합 결과로 마지막 날인 7월 16일 오후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이 채택되었다. 본 장에서는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번 개발 재원 총회를 통한 주요 성과 및 한계를 짚어본다.

3.1. 총론 : Post-2015 개발재원 글로벌 프레임워크

(A global framework for financing development post-2015) (1~19항)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총론은 포스트-2015 개발재원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A Global Framework for Financing Development Post-2015)라는 주제 하에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총론에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선언을 재확인하고(제1항), SDGs 달성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제2항). 특히, 제2항에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선언 이행상황 점검,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이행수단 강화, ◇동 행동계획의 검토 및 후속조치 점검방안 마련이라는 세 가지 사항을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과제로 기술하고 있다.

제6~8항에서는 보다 다양해지고 분화된 개발협력사업 수혜자 그룹의 개발니즈(Needs)를 설명하고 있다. MDGs에서 더 나아가 여성 및 여아(Women and Girls)의 권한강화(Empowerment)와 성 평등 및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와 권한보호 등 특별한 개발 수요의 중요성에 대해 나열하였다. 한편, 국가 단위에서는 최빈국, 내륙개발도상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 소규모도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취약국(Fragile States) 등의 보다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들이 직면한 특별한 도전과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다.

한편, SDGs 목표 간의 상호 연계성에 주목하여, 한 목표의 이행이 다른 목표의 달성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표간 시너지효과를 설명하고, 이러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차영역(cross-cutting area)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1항). 이는 모두를 위한 사회적 보호 및 필수적 공공서비스 제공(12항); 기아와 영양실조 종식을 위한 노력 확대(13항); 인프라 간극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포럼 설립(14항);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촉진 (15항); 모두를 위한 생산적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촉진(16항); 모두를 위한 우리의 생태계 보호(17항);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촉진(18항)등이다.

이 중, 제 12항에 제시된 사회적협약(social compact)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언급된다. 사회계약설에 대비되는 개념인 사회적협약은 국가가 교육, 보건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을 지며, 이러한 시스템의 자체적 설립이 어려울 경우, 국제사회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성과로 인프라 포럼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제14항), 개도국의 인프라간극을 좁히기 위해 기존의 투자 파트너십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 이니셔티브, 다자 및 국가 개발은행, UN기구, 정부 및 민간 부문이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자개발은행 주도의 인프라 포럼의 정기적인 개최에 합의했다.

3.2. 행동분야 (Action Areas) (20~124항)

본문에는 7개 분야별 행동분야들이 기술되어 있다. 첫 번째 행동분야인 국내공공자원(Domestic public resources)(20~34항)에서는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국내자원 동원에 있어 국가의 주인의식이 중요함을 환기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원조를 통해 자원 동원 노력을 지원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국내공적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징수에 있어서는 선진국 측과 개도국 측 입장이 모두 반영되어 탈세 및 부정부패 방지에 대한 내용과 국제적 불법자금흐름 방지 및 국제조세협력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만, 개도국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UN 조세기구의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에 양측 간의 절충을 통해 기존의 유명무실했던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UN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의 효과성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을 높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모임 빈도를 연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림으로써 본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조세 이슈의 정부 간 고려를 늘린다는 관점에서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특별회의(the Special Meet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ax Matters)를 통하여 경제사회이사회(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위원회 간의 참여를 증대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항목인 국내외적 민간기업과 재원(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business and finance)(35~49항)에서는 민간기업의 활동이 포괄적 성장과 고용, 혁신의 주요 동력임을 언급하며, SDGs 달성을 위한 민간 부문의 노력을 강조했다. 다만, 민간부문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의 목표와 민간부문을 잘 연계하는 공공정책과 적절한 규제가 동반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노동기준,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 노동기준이나 인권원칙과 합치되어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37항). 또한, 빈곤층, 여성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부족을 지적하며,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증진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전략 채택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융 포용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액 평균거래비용을 2030년까지 거래금액의 3%미만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40항). 마지막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여러 조항에서 언급하며, 투자에 있어 경제, 사회, 환경 등 비금융적 영향을 고려하는 임팩트 투자의 장려, 최빈국·소규모도서국 등이 가진 제약 고려,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항목은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50~78항)으로써 ODA와 같은 국제공공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기존의 ODA 공약 달성을 재확인했다. 한편, 최빈국에 대한 지원감소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최빈국 지원목표인 ODA/GNI 0.15-0.2%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7개 행동 분야 중 가장 많은 항목 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ODA 규모 증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점과 이행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개도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비판도 제기되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데이터 투명성과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변화된 개발지형을 반영하며 남남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관심사였던 개발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인 4대 원칙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출범한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EDC)의 노력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58조).

한편, 개도국과 선진국의 대립사항 중 하나였던 기후재원과 ODA 구분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원을 동원한다는 내용으로 절충하여 개도국의 의견이 보다 강하게 반영된 반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 Responsibility, CBDR)”을 대원칙으로 반영하자는 개도국의 주장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선진국의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발동력으로서의 무역(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79~92항) 분야의 경우 기존의 협약과 협정에 대한 비준과 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최빈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강화를 여러 조항에서 강조하였으나, 시민단체와 개도국들이 요구해온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대응방안이 없이 기존의 내용의 재확인에서 마무리되었다. 본 회의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 State Dispute)에 대한 문제점 보완과 무역관련 인권 및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이 여러 나라 대표 및 시민단체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외채문제를 다룬 부채 및 부채지속가능성(Debt and debt sustainability)(93~102항)의 경우 국가 차입이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투자 자원 조달에 중요한 도구임은 인정하나, 신중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부채탕감, 채무조정 및 관리 등의 촉진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적 부채 지속 가능성 유지를 지원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최빈국 및 소규모도서국(SIDS)이 가진 어려움을 인정하였다. 또한, 지속 가능한 부채 상황 유지는 채권국 및 채무국 모두의 책임이 따르는 것을 강조하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원칙을 언급하였고 양측의 효과적인 협력 및 조정을 위한 매개로써 파리클럽이 주도하는 파리포럼이니셔티브²⁾를 인정하였다. 개도국의 부채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무스왑(debt swap)을 사례로 언급하였으나, 역시 구체적이며 혁신적인 방

안이 도입되지는 못했다(TWN 2015).

시스템 이슈 대응(Addressing systemic issues)(103~113항)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된 국제경제상황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금융 및 거시 경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일관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국제 경제체제의 의사결정 및 세계경제 거버넌스에서 개도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이 포함되었다(106항). 또한, 영구적 국제 금융 안정망 강화를 위한 국제금융기구들의 책임을 언급하고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기계적 의존도 감소에 합의하였으며(110항), 곡물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개도국 피해 저감을 위해 세계 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가 주관하는 농업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활용에 주목했다.

이번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서 새롭게 추가된 과학기술혁신 및 역량강화(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apacity-building)(114~124항)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단체와 개도국으로부터 환영받은 기술촉진메커니즘(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출범을 위한 합의가 마련되었다(123항). 이 메커니즘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협력에 기반을 두어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STI)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포럼 설립 및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의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3.3. 데이터,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Data, monitoring and follow-up)(125~134항)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며 관련하여 데이터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후속조치 및 검토를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환영하면서(130항),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연례포럼에서 통합적으로 의제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무총장 산하의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여 Post-2015개발의제 및 재원에 대한 진척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언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독려하며(133항), 마지막으로 4년 뒤인 2019년 내에 후속회의 개최를 고려할 것을 제시한다(134항).

3.4 종합분석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몇 가지 실질적인 성과물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 혁신(이하 STI)관련이다. 과학·기술·혁신노력 지원을 위해 UN기구들은 공동 정보 플랫폼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2015년 9월 유엔정상회의 이후에 공동정보플랫폼, 지속가능한 목표

2) 파리포럼(Paris Forum)은 2013년 이후 파리클럽과 G20 국가 대통령이 교대로 개최하는 연간 행사로서 국가 자원마련 관련 글로벌 발전과 국가재무 위기 해결에 대한 솔직하고 열린 논쟁을 위해 채권국과 채무국 대표가 모이는 자리이다. 최근 파리포럼은 2014년 11월 20일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를 위한 STI 당사자회의 및 유엔기구간 태스크포스로 구성되는 기술촉진메커니즘(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이 구축된다. 두 번째로는 범지구적 인프라스트럭처 포럼이 설립된다. 동 포럼은 다자개발은행, 국별 개발은행, UN기구, 민간부문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다른 인프라관련 이니셔티브간의 조정과 통합, 조율을 수행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개발재원에 대한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포럼이 구성되어 후속조치들과 이행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UN사무총장 주재 하에 Post-2015의 이행수단과 개발재원회의의 결과물들의 이행상황에 대해 연도별 보고를 담당하는 기구 간 태스크팀(Inter-Agency Task Team)이 소집된다.

또한, AAAA를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 우리나라도 참여한 아디스조세이니셔티브(Addis Tax Initiative)³⁾가 출범하여 개도국의 조세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여성과 아동의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발족한 ‘모든 여성, 모든 아동(Every Woman Every Child)’을 지원하기 위한 지구재원기금(Global Financing Facility; GFF)⁴⁾이 공식 출범 하였다.

두 번째로 민간재원 동원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은 개발협력의 문제가 국제공적재원활용의 문제를 넘어서 국내 공적 재원 및 국내의 민간재원의 중요성까지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몬테레이 컨센서스에 이어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또한 개발재원의 중심은 개도국 자체의 공적재원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ODA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규모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개도국의 투자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과 IMF,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유럽부흥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지난 4월 “from billions to trillions”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회의에서 같은 제목의 부대행사를 개최하며, SDGs 달성을 위해 다양한 민간 및 공적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World Bank 2015). 따라서 이번 개발재원총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

3) 개도국의 국내재원 조성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네덜란드 주도 하에 추진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 및 기구의 참여로 이번 개발재원총회에서 출범함. 참여국 공동으로 2020년까지 대개도국 조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2배 확대, 개도국의 경우, 국내 거버넌스 및 제도 강화, 조세 시스템 현대화 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 노력 이행, 국내 재원 조성에 기여하는 정책 정합성 제고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함.

4) 모든 여성, 모든 아동(Every Woman Every Child)은 2010년 9월 유엔 MDGs 정상회의(the 2010 United Nations Summit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출범하였으며, 전세계 여성과 아동의 보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정부, 다자기구,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에 의한 국제 및 국내 행동을 동원하는 글로벌 운동이다. 2010년 이후 본 운동은 300여개 이상의 기관이 글로벌 여성 및 아동 보건 전략(the Global Strategy for Women's and Children's Health)의 진전을 위해 본 운동에 약속하였으며, 약속된 자금 중 US\$ 342억 불이 2014년 5월 시점에 집행되었다.

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기획해야 하는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재원 동원 관련 여러 부대행사들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서는 개도국 투자가 수반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아직까지 개발협력 및 원조기관들은 이러한 위험을 적절히 상쇄하며 민간자본을 유인할 안정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CSO for FFD 2015). 민간자본 동원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 등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며 공적자원을 통해 민간자본의 투자수익만을 보장해주지만 실질적인 개발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내포한다(Eurodad 2015). 개도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수행한 서구 공여국조차도 개도국 시장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사회적 위험성으로 인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민간자본동원은 전통적인 공여국들이 자국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ODA증액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상쇄하려는 방안이라는 우려도 있다(박수영, 조한솔 2015).

세 번째로는 개발정책정합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제고 방안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개발정책과 관련 정책간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개발정책정합성은 OECD에서도 그동안 중요 정책과제로 다루어져왔다. SDGs 목표체계가 보여주듯 개도국의 개발문제는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박수영 2015). 즉, ODA만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와 이들 정책 간의 통합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SDGs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이기도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서도 ODA와 원조는 기존의 교육, 보건 등의 분야를 넘어 무역, 금융, 통화, 조세, 산업개발, 인프라투자, 과학기술 등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협력분야와 연계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분야들까지 망라하여 기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을 지지하면서도 이번 개발재원회의에서 새로 출범될 기술촉진메커니즘 등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협력이 기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협약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기술정책과 개도국 기술이전에 대한 국제적 협의를 반영해야 하는 개발협력정책 사이에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평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큰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OECD의 BEPS⁵⁾등의 논의 역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에, 개도국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나 기후재원 등의 논의는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환경정책 수립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금융, 무역, 조세, 과학

5) 세금잠식 및 소득이전. 다국적 기업 등이 자국과 외국의 조세규정이 다른 점을 악용하여 세금을 편법으로 내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세수, 과세주권, 조세형평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BEPS 문제는 한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제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OECD가 BEPS관련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 정책에서 개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정합성은 사회통합,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이라는 보다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목표체계를 갖춘 SDGs를 생각할 때 더욱 필요시 된다.

마지막으로는 통계 및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고려이다. 이번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결과문서를 위해 올해 5월에 진행된 2차 문안협상에서 ‘데이터,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를 행동분야들 중 하나에서 별도로 대분류 항목으로 상승시킨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서는 계획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개도국 국내재원동원 노력 지원 및 원조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도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공개가 강조되었다. SDGs 역시 이후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투명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OECD가 주도하는 ODA 정의 현대화와 총공적개발지원(TOSSD)수립 역시도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의 통합 이슈와 필요 데이터에 대해 수집 및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국제적인 데이터 투명성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우리 원조에 대한 시사점

위에서 제시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분석에 기반을 두어 전반적인 상위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사업추진전략 및 신규사업추진에서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부분은 개도국의 조세역량강화 사업 추진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도국의 조세수입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개발재원이다. 개도국이 스스로의 개발투자 수요를 자체적인 조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 정부가 역량을 배양하고 법적, 제도적, 기술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세를 효과적으로 징수, 집행토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핀란드, 호주, 영국 등 공여국들은 아디스 조세이니셔티브(Addis Tax Initiative, ATI)를 발족하고 개도국의 조세행정 역량강화 지원을 천명했다. 따라서, 신규 개발사업 추진 시 조세 행정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단, 개도국별로 상이한 조세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따른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추진보다는 ATI가입국들 및 지원을 약속한 OECD, 세계은행, 게이트재단, 아프리카조세행정포럼 (Africa Tax Administration Forum, ATAF), 미주조세행정센터 (Inter-American Center for Tax Administration, CIAT)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추진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술촉진메커니즘(TFM)관련 협력이다.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제123항에서 개도국을 위한 역량강화와 과학기술혁신(STI)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같이 과학기술혁신 분야 내의 강점을 살려서,

UN의 논의에 참여하고 최빈국의 기술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 ODA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확대, 발전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을 통해 성장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한편, 몬테레이 컨센서스에 이어 이번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서도 무역은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을 점검하고 확대 발전시켜 우리의 발전경험과 개도국의 현재 발전상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사업을 통해 개도국 무역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를 실시하는 연계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네 번째, 민간재원 동원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금융 기법 및 사업 유형에 대한 연구와 공동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ODA가 민간 재원의 동원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의 사업형태 만을 고수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재원 동원에 따르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단독적인 사업 추진은 위험성이 큰 바, 선행연구와 공동 시범사업 추진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시행한 경험이 풍부한 타 원조기관들의 전략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연구하고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앞서 이루어져야겠다. 그 이후에, 타 기관들의 사업성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수 사업에 대한 공동 자금지원 등을 통해 공동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노하우와 경험을 쌓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및 SDGs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 제안이다.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종장에서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메커니즘의 필요성 그리고, 동 행동계획과 SDGs 모니터링 체제의 연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별로 상이한 역량과 제도, 입장차를 고려할 때 정확한 모니터링과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제에 참여하여 국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동아시아 또는 ASEAN+3 국가들을 규합하여 지역 단위에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및 SDGs 이행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별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주도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총회는 올해 개최되는 개발협력의 세 개 주요 국제회의 중 첫 번째 행사였으며, 동 행동계획은 이제 9월의 UN정상회의, 12월의 COP21의 논의에 반영되어 향후 15년 간의 개발협력정책 구축의 근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동 행동계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류승석 (2013) 국제사회의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와 우리나라 ODA에 주는 시사점.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제 9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박수영 (2015) “결론: 2015–2030 개발협력의 새로운 15년을 준비하며.” 박수영, 김지현, 전명현 편.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박수영, 조한솔 (2015) Post-2015체제의 ODA정의 현대화와 총공적개발지원 분석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정지원, 정지선 (201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CSOs for the 3rd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 (2015) Civil Society Response to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ccessed at <https://csoforffd.files.wordpress.com/2015/07/cso-response-to-ffd-addis-ababa-action-agenda-16-july-2015.pdf>]
- OECD (2009) Innovative Financing to Fund Development: Progress and prospects.
- TWN (2015) Addis Ababa Agenda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dopted amidst wide disappointment. Third World network. [accessed at <http://www.twtn.my/title2/unsd/2015/unsd150712.htm>]
- UN (2003) Monterrey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he final text of agreement and commitments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 UN (2008) Doha Declaration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outcome document of the 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errey Consensus
- UN (2015) Outcome document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ddis Ababa Action Agenda.
- World Bank (2015) From Billions to Trillions: Transforming Development Finance Post-2015 Financing for Development; Multilateral Development Finance. Development Committee Discussion Note. [accessed at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DEVCOMMITTEE/Documentation/23659446/DC2015-0002\(E\)FinancingforDevelopment.pdf](http://siteresources.worldbank.org/DEVCOMMITTEE/Documentation/23659446/DC2015-0002(E)FinancingforDevelopment.pdf)]

첨부자료: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번역 및 조사 김재원, 박혜영, 이연지, 이영지

I. 포스트 2015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1. 우리, 국가 원수 및 정부 고위 대표는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아디스아바바에 모여 글로벌 파트너십 및 연대의 정신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성에 관한 도전과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강력한 정치적 공약을 확인한다. 우리는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스 및 2008년 도하선언을 재확인하며 그에 기반을 둔다. 우리의 목표는 빈곤과 기아를 종식하고 포괄적 경제성장 증진, 환경 보호 및 사회 통합 도모를 통해 세 가지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성 평등, 여성 및 여아의 임파워먼트를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존하는 동시에, 평화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를 촉진할 것이며, 어떤 국가도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품위 있는 일자리와 생산적인 생계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위해 온전히 나아갈 것이다.
2. 2015년 9월, 유엔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포함하여 대망을 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post-2015 개발의제를 채택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주최할 예정이다. 본 의제는 마찬가지로 야심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행수단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총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의제의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전념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왔다. 우리에게 세 가지 과제가 있다: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선언 이행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재원 마련 프레임워크와 포괄적 Post-2015 개발의제 이행 수단을 보다 강화하며; 우리가 약속한 행동이 적절하고, 포괄적이며, 시의적절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검토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개발 후속 조치 과정에 대한 재원 마련을 재활성화 및 강화하는 것이다.
3. 우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 채택 이후 세계는 상당한 종합적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세계적으로, 경제활동 및 자금흐름은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는 증가하는 개발 행위자들로부터 개발을 위한 재원 및 기술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 위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과학기술혁신의 진보는 우리의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향상시켰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국내 재원 동원증가와 경제발전 및 사회진보 수준을 높이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시행해왔다. 세계 무역 내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대다수의 가난한 국가에서 부채부담은 아직 남아있지만 감소하였다. 이러한 진보는 국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4.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는 더욱 뒤떨어지게 되었다. 많은 국가의 내부 불평등은 급격히 증가했다. 세계 인구의 반을 대표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토착민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경제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몬테레이 의제가 완전히 실행되지 못한 동안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생겨났으며, 지속

1) 이스탄불 행동계획

이스탄불 행동계획(Istanbul Program of Action)은 이스탄불 선언(Istanbul Declaration)과 함께 제 4차 UN 최빈개도국회의에서 채택된 문서이다. 현재 48 개국에 달하는 최빈개도국의 절반이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최빈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8개 분야별(①생산역량 ②농업, 식량안보, 농촌개발 ③무역 ④상품 다변화 및 변동성 완화 ⑤인간 및 사회 개발 ⑥ 위기대응 ⑦개발 및 역량구축을 위한 자원 확보 ⑧선정(good governance))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

2) 소규모 도서국 행동 촉진

2014년 9월 사모아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소규모도서국 컨퍼런스(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에서 채택된 합의서로서 'the 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Pathway' 또는 'S.A.M.O.A. Pathway'로 불린다.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시금 강조하였고, 개인·지역·국가·민간의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 기후변화, 에너지, 재해위험경감, 해양, 식량 안보, 사회발전 등의 세부 주제를 다루고 있다.

3) 2014~2024년 내륙국을 위한 비엔나 행동계획

제2차 UN 내륙개발도상국회의에서 마련된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32개 내륙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이 국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저해요인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이 계획에 포함된 6개 우선순위로 ①수송 ②무역 ③인프라 ④지역협력 ⑤구조개혁 ⑥이행수단이 있다.

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수요는 충족되지 못한 채 거대하게 남아있다. 2008년 세계 금융경제 위기는 국제 금융경제 시스템의 위험과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현재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위기 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경제위기, 분쟁, 자연재해 및 질병발생으로부터의 충격은 고도로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급속도로 퍼져 나간다. 환경 악화, 기후변화 및 기타 환경 위기는 과거의 성공과 미래 번영을 약화하는 조짐을 보이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발전노력들이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는 회복력을 강화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5.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은 모든 수준에서의 공공 정책, 규제 체계 및 자원 강화, 사람들과 민간부문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원 마련뿐만 아니라 소비와 생산 패턴 변화의 장려 등을 포함하여 모색될 수 있다. 적절한 인센티브, 국내 및 국제 정책 환경 및 규제 체계와 그들 간의 일관성 강화, 과학기술혁신의 잠재력 활용, 모든 수준에서의 기술격차 감소 및 역량개발 확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향한 변화에 있어 필수적이다. 우리는 모든 수준과 형태의 자유, 인권, 국가 주권, 국거버넌스, 법치주의, 평화 및 안보, 부정부패 퇴치와 준국가,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효과적, 효율적이며 투명한 자원 동원과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으로써의 효과적, 책무적, 포괄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한다.
6. 우리는 성 평등 달성,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임파워먼트, 그들 인권 최대실현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공정한 경제 성장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 필수적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재정, 경제, 환경, 사회 정책의 형성 및 시행에 있어 필요한 행동 및 투자를 포함하여 성 주류화의 필요성을 반복한다. 우리는 여성의 경제 참여와 리더십을 위한 동등한 권리, 접근성 보장과 젠더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 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률 제정,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을 채택하고 강화할 것을 다시 회부한다.
7. 우리는 아동과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이러한 영역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데 있어 특정한 도전과제에 직면한 국가들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모든 아동의 증진 및 보호의 필수적인 중요성과 어떠한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재확인한다.
8.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개발도상국 및 소규모도서국, 특정 도전과제에 직면한 중소득국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수요와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국가 그룹으로서의 최빈국이 post-2015 개발 의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달성에 있어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강화된 글로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내륙개발도상국들이 경제 구조 변혁, 국제무역으로부터의 혜택 활용, 효율적인 교통 및 수송 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있어 당면한 특정 도전과제와 수요를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소규모도서국이 그들의 작은 규모, 고립성, 한정된 자원과 수출 근거지, 글로벌 환경 도전과제에 노출된 점 등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특별한 사례로 있음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를 포함하여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사회경제 변혁이룩의 필요성, 중소득국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발 수요를 고심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스탄불 선언과 행동계획(the Istanbul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¹⁾, **소규모 도서국 행동 촉진(the 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SAMOA) Pathway**²⁾, **2014-2024년 내륙국을 위한 비엔나 행동계획(the Vienna Programme of Action for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Decade 2014-2024)**³⁾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전략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지원하며, 향후 50년 내 아프리카의 긍정적 사회경제 변혁과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⁴⁾ 총회 결의안에 담긴 아프리카 대륙의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로서 **아프리카 연합 의제 2063(the African Union's Agenda 2063)**⁵⁾뿐만 아니라 그것의 10년 행동계획을 새로운 발전 프레임워크로 지원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분쟁 중이거나 분쟁 후 상황에 있는 국가들 또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수십 년간의 발전 성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후퇴시킬 수 있는 분쟁이 야기시킨 발전 과제들을 인지한다. 우리는 평화구축 재원 마련 격차와 평화구축 펀드(the PeaceBuilding Fund)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분쟁에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받고 있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G7+(the Group of Seven Plus)에 의한 **뉴딜(the New Deal)원칙**⁶⁾에 주목한다.

9. 통합적 국가 재정 프레임워크가 지원하는 응집된 국가가 마련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은 우리 노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각 국가는 자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적 책임이 있으며, 국가 정책 및 발전 전략의 역할은 지나치게 강조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한다. 우리는 관련 국제 규범과 공약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각 국가의 정책 공간(policy space) 및 리더십을 존중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의 발전 노력은 일관되고 상호 지지하는 국제 무역, 통화금융 시스템, 강화 향상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포함한 합법적인 국제 경제 환경에 의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지식 및 기술의 이용가능성과 역량 개발을 진전시키고 촉진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모든 행위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과 합법적인 환경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 하는데 전념한다.

10. 정부에 의해 주도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향상되고 재활성화 된 글로벌 파트너십은 Post-2015 개발 의제 시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자원, 지식 및 민간부문의 독창성, 시민

4)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NEPAD는 범아프리카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로, 21세기 아프리카의 비전이자 정책적 프레임워크이다. 아프리카 대륙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 개발, 국제적인 아프리카 소외현상과 같은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지도자들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협력의제와 관련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한다.

5) 아프리카 연합 의제 2063

아프리카의 자원활용을 최적화하여, 그 혜택이 모두 아프리카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 어젠다로서,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이 제시하였다. 향후 50년 내, 아프리카의 긍정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배우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전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가능한 모든 기회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담고 있다.

6) 뉴딜(the New Deal)원칙

'뉴딜'의 정식 명칭은 '취약국 개입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이다. '뉴딜'은 분쟁 및 취약국의 평화구축과 국가건설, 그리고 개발 지원을 위해 주요 공여자들, 분쟁 및 취약국 당사자들, 그리고 시민사회기구들이 합의한 협력 원칙으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문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뉴딜'은 분쟁 및 취약국의 상황이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다는 판단에서 '분쟁 및 취약국'에 특화된 개발협력, 즉 '평화구축과 국가건설'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인도주의적 개입의 주권 침해나 내정간섭 비판을 의식해 분쟁 및 취약국의 주인의식과 자기주도성, 그리고 공여자와 수원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사회, 과학계, 학계, 자선 단체 및 재단, 의회, 지역정부 당국, 자원봉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식, 전문가, 기술 및 금융자원을 동원 및 공유하고, 정부의 노력을 보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본 글로벌 파트너십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포함한 Post-2015 개발의제가 다른 국가적 현실상황, 역량, 필요성 및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를 존중하는 동시에 본질상 모든 국가에 세계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공정한, 포괄적이고 평화적이며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오늘날 우리가 만든 약속의 성공과 이행을 위한 책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1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하여 야심찬 Post-2015 개발 의제를 달성하는 것은 이행수단, 다른 이행수단의 결합,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 요소의 통합과 관련하여 동등하게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총체적 변혁적인 접근방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책무적, 포괄적인 제도, 건전한 정책과 거버넌스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포함한 post-2015 개발의제가 서로의 상당한 시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행동을 파악하고 중요한 격차를 고심함으로써, 이는 하나의 시행이 다른 하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크로스커팅 분야를 확인하였다.
12. **모두를 위한 사회적 보호 및 필수적 공공 서비스 제공.** 모든 형태의 빈곤을 전세계에서 종식시키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협약(social compact)을 약속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는 빈곤선 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취약한 사람들, 장애인, 토착민, 아동, 청년 및 고령자에 중점을 둔다. 함께 모두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국가적으로 적절한 사회 보호 시스템 및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각국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일관되게 보건, 교육, 에너지, 식수위생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필수 공공 서비스에 품질 투자를 위한 국가적으로 적절한 지출목표 수립을 고려하는 것을 장려한다. 국가 지속가능개발 전략과 일관된 보건, 교육, 에너지, 식수, 위생을 포함한 주요 공공 서비스에서 양질의 투자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 이행을 통해 모든 커뮤니티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위한 강력한 국제 지원을 약속하며, 국가주도의 경험을 기반으로 추가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일관된 재원마련 양식(funding modalities)를 살펴볼 것이다.
13. **기아와 영양실조 종식을 위한 노력 확대.** 8억에 가까운 인구가 만성적인 영양결핍 상태이며, 충분한, 안전한, 그리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수의 빈곤층이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는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업분야 재활성화, 농촌 개발 증진, 식량 안보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전반의 달성(rich payoffs)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임업, 어업, 유목업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도시빈민의 기아와 영양실조와 싸우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이 분야의 거대한 투자 수요를 인지하여, 우리는 공공, 민간 투자 증대를 장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세계 식량 안보 위원회의 자발적인 ‘농업과 식량 시스템 책임 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in Agriculture and Food Systems)’과 ‘땅의 수명, 어업 및 임업의 책임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the 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을 인지한다. 우리는 농촌 빈곤층의 식량안보 및 영양 증진, 소득증대, 회복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동원하는 데 있어 국제농업개발기금(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의 노력을 인정하는 바이다. 우리는 유엔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세계은행 및 기타 다자 개발 은행의 노력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식량안보 및 영양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모두를 위한 식량 안보 및 영양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옵션과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식량에 관한 로마 선언(the Rome Declaration on Nutrition)과 행동계획⁷⁾(the Framework for Action)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리서치, 인프라 및 친빈곤 이니셔티브의 재원마련에 있어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 투자 증대를 약속한다. 우리는 식량 안보 및 영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소규모 자작농, 여성농부, 농업협동조합 및 농부네트워크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단체들에게 그들 각각의 권한과 관련하여, 보다 조직화하고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시장 접근성 향상, 합법적인 국내외 환경 마련, ‘포괄적 아프리카 농업 개발 계획(the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⁸⁾과 같은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본 영역의 많은 이니셔티브간의 협력강화에 의해 지원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수확 후의 식량 손실 및 낭비를 크게 감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 로마 선언과 행동계획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차 ‘식량 관련 국제회의(ICN2)’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모든 사람이 기아나 영양실조 없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동 계획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건, 농업, 교육, 개발과 투자계획 등의 정책을 시행할 때 포함시켜야 할 60개의 권고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로마선언과 행동계획에 서명한 국가들은 오는 2025년까지 영아와 어린이 영양상태, 당뇨와 심장병 그리고 일부 암 발병 현황 등 개별 행동 계획의 목표에 따른 구체적 실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8) 포괄적 아프리카 농업 개발 계획

NEPAD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범아프리카 차원의 농업개발 프로젝트로서, 농촌 변화, 부의 창출, 식량 안보 및 영양, 경제성장 및 번영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이다. 주요 목표는 ① 지속관리 가능한 농토 확대, ② 농업기반시설 및 생산품의 시장접근성 향상, ③ 식량공급 확대, 기아감소 및 구급식량 비축, ④ 농업 연구조사 및 기술 향상이다.

14. **인프라 간극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포럼 설립.** 모두를 위한 교통, 에너지, 식수 위생을 포함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 중 많은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1조~1.5조 달러의 개발도상국 내 연간 격차를 포함해 글로벌 인프라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향상된 재정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접근 가능한, 회복력 있는 양질의 인프라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글로벌 인프라 허브(the Global Infrastructure Hub), 신개발 은행(the New Development Bank), 아시아태평양 프로젝트 준비 시설(the Asia Pacific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세계은행의 글로벌 인프라 시설(the World Bank Group's

9) 국제 노동 기구 글로벌 일자리 협약

'ILO의 글로벌일자리협약'은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적 위기의 심화와 실업 지속에 따른 사회적 위기 도래에 따라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ILO, IMF, OECD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UN 수장회의(UN Chief Executive Board)에서 위기대응을 위해 추진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고용, 사회보호 정책을 통한 위기대응 및 사회 대화 강화 및 근로자 기본권 존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및 아프리카 50 인프라 펀드(Africa 50 Infrastructure Fund)를 포함해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목적의 새로운 인프라 이니셔티브의 출범뿐만 아니라 미주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의 자본 증가를 환영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부분으로서, 우리는 다자개발은행이 주도하는 기존의 다자 협력 메커니즘 기반을 둔 글로벌인프라 포럼 설립을 요청한다. 본 포럼은 새로운 인프라 이니셔티브, 다자 및 국가 개발 은행, 유엔 기구, 국가 기관, 개발 파트너 및 민간부문 간의 일치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일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들리는 목소리들, 특히 최빈국, 내륙개도국, 소규모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 내 인프라와 역량 격차를 확인하고 다루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장려한다. 우리는 투자 및 협력을 위한 기회를 강조하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5.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촉진.** 우리는 경제 성장, 경제다양화 및 가치 부가의 중요한 근원으로서 개발도상국 산업 발전의 중대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성장과 직업,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오염과 기후변화, 지식 공유, 혁신 및 사회 통합과 같은 주요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투자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인프라 개발, 포괄적, 지속 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의 연계를 증진하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를 포함한 유엔 시스템 내 관련 협력을 환영한다.

16. **모두를 위한 생산적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마이크로, 중소기업 촉진.** 모든 사람이 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의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 목표로써 포함할 것이다. 우리는 공식적 노동 시장 내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국가에서 방대한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이크로, 중소기업 등이 종종 재원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것을 주목한다. 민간행위자 및 개발 은행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마이크로, 중소기업의 신용에 대한 적절하고 비용이 알맞으며 안정적인 접근성과 모두를 위한, 특히 청년 및 기업가들을 위해 적합한 기술 개발 훈련의 촉진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가적 청년 전략을 젊은 계층의 수요 및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주요 도구로써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0년 내에 청년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 및 운영화하고, '국제 노동 기구 글로벌 일자리 협약(ILO Global Jobs Pact)⁹⁾'을 이행 할 것이다.

17. **모두를 위한 우리의 생태계 보호.** 우리의 모든 행위는 지구와 천연 자원 및 생물 다양성과 기후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강력한 책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해양, 육상 생태계를 포함한 우리의 생태계를 보호, 관리 및 회복하

고, 그들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 회복력 구축, 환경 오염 감소 및 기후변화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방지를 촉진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자원마련, 무역 및 기술 프레임워크를 약속한다. 우리는 해로운 행동은 피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지한다. 정부, 기업 그리고 가정 모두는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영향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기술이 낭비를 줄이고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대체할 수는 없음을 명심하는 동시에, 혁신과 청정 기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18.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촉진.**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촉진 및 모든 수준에서의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으며, 포괄적인 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굿거버넌스, 법치, 인권, 기본적 자유, 공정한 정의의 시스템에의 평등한 접근, 부패 척결 및 불법자금 흐름 억제 방안은 우리의 노력에 통합될 것이다.

1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포함한 Post-2015 개발 의제는 본 행동 의제 내에 서술된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에 의해 지원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재활성화된 글로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내에서 충족될 수 있다.

II. 행동 분야

A. 국내 공공 자원(Domestic public resources)

20. 모든 국가에게 주인 의식 원칙이 강조된 공공정책과 국내 자원 동원 및 효과적인 활용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포함한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공통적 추구의 핵심이다. 몬테레이 이후 많은 국가 내의 상당한 성취에 기반을 두어, 우리는 국내 자원의 동원 및 효과적 사용 강화에 전념한다. 우리는 국내 자원들이 모든 수준에서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 의해 지원받은 경제 성장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경기대응재정 정책, 적절한 재정 공간, 모든 수준에서의 굿거버넌스, 모든 사람들의 수요에 반응하는 민주주의 및 투명한 제도를 포함한 사회, 환경 및 경제 정책은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 우리는 법치 및 모든 수준과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퇴치를 포함한 국내의 합법적 환경을 강화할 것이다. 시민 사회, 독립적 매체 및 기타 비정부 행위자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0) 국제자금세탁방지(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정부 간 기구로서,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1989년 파리에서의 G7 정상 회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될 당시에는 자금세탁척결을 위한 도구 개발 및 검증 임무를 맡았으나, 2001년 10월 테러분자금용척결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권한을 확장하였다. 현재 이 기구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관련 국제기준을 제·개정하고 각국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며, 비협조국에 대해 제재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21. 여러 증거들은 성평등, 여성의 임파워먼트 및 여성의 경제에서의 동등한 참여 및 리더십 등은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과 상당한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국내 정책 내의 사회 통합촉진을 약속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사회 인프라 및 정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경제 참여와 그들의 의사결정과정과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2. 우리는 국제원조에 의해 적절하게 보충된 상당한 추가적 국내 공공 자원이 지속가능발전 실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화되고 진보적인 조세 시스템, 개선된 세금 정책 및 보다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통한 세입 행정 향상을 약속한다. 우리는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국가 상황에 맞추어 과세 기준을 확대하고, 비공식분야를 공식경제에 통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증대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협력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별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국내 세수 증대를 위해 국가별로 정의한 목표와 시기를 설정한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지원 할 것이다.
23. 우리는 국가 규제 강화 및 국제 협력 증진을 통해 탈세 및 부정부패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불법자금흐름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불법자금흐름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 두 배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탈세 기회를 줄이고 모든 조세 조약에 남용방지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조세 당국에게 정부와 기업간의 모든 금융 거래에 있어 투명성 보장을 추구할 것을 포함하여 근원국(source country)과 목적국(destination country) 내의 공개 관행과 투명성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국내, 국제법과 정책에 맞추어 경제활동이 발생하고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다.
24. 우리는 아프리카의 불법자금흐름에 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 주목한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게도 유사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불법자금흐름 방지를 위해, 우리는 IMF, 세계은행, 유엔에게 모든 근원국과 목적국을 지원하는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적절한 국제기관과 지역 기구에 불법자금흐름의 규모와 구성의 추정치를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laundering)/ 반테러리즘자금조달(counter-terrorism financing)에 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기준¹⁰⁾ 효과적인 실행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을 파악, 평가, 해결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자금세탁방지의 잠재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금융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감소를 위한 테러리즘 자

금조달 기준 방지를 장려할 것이다.

25. 우리는 아직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¹¹⁾에 비준 및 가입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의 행동을 촉구하며, 비준국에게 시행여부 검토를 장려한다. 우리는 본 협약이 부정부패 및 뇌물을 감지, 조사, 방지 및 대응하고, 부정부패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고발하며, 빼앗긴 자산을 그들의 본래 국가로 돌려주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가 자산 반환에 대한 좋은 선례를 만들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빼앗긴 자산 반환을 지지하는 유엔과 세계은행의 '자산 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¹²⁾와 기타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우리는 부정부패방지지역 협약이 갱신되고 비준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훔친 자산과 불법자금흐름의 해외 이전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회피처를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금융기관, 기업 분야 및 공공 행정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의 규제프레임워크를 강화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내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26. 천연 자원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는 국가들은 특정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천연자원의 부가 가치와 가공 및 생산적 다양화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또한 이러한 부분의 투자, 특히 채광 산업 투자와 관련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를 고민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그들의 부, 천연 자원 및 경제 활동에 있어 완전하고 영구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를 자유롭게 행사함을 재확인 한다. 우리는 모든 기업의, 특히 채광 산업 내에서, 기업의 투명성 및 책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채굴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¹³⁾와 같은 자발적 이니셔티브에 주목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성공사례 공유와 공평하고 투명한 권리, 수익, 로열티 합의를 위한 계약 협상과 계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동료 학습과 역량강화 증진을 지속할 것이다.

27. 우리는 국제 조세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그들의 국가 역량 및 상황에 따라 투명성 강화, 적합한 정책 채택을 협력 할 것을 독려한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는 각 국가 조세당국에 보고; 권한 당국을 위한 수익 소유권 정보접근; 개발도상국, 특히 필요한 만큼의 최빈국에 대한 지원과 함께 조세당국 간의 조세 정보의 자발적 공유를 포함한다. 세금 혜택은 적절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로운 조세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들은 지역 및 국제 포럼에서 조세 혜택에 대한 자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28. 우리는 국제 조세 협력에 대한 노력은 접근방식 및 범위에 있어 보편적이어야 하며, 모든 국가, 특히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의 서로 다른

11) 유엔반부패협약

유엔(UN)에서 2000년부터 각국이 연루된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03년 10월 31일 채택한 반부패협약은 부패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반부패 기구를 창설하거나 선거·정당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가 광범위한 부패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뇌물과 횡령, 자금세탁 등을 불법화하는 법률을 채택하며, 부패를 지원하거나 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범죄로 다루어 한다고 명시했다. 이 협약은 특히 정치 지도자에 의해 수탈된 국가 자산을 차기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2) 자산 회수 이니셔티브

World Bank Group과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 마약범죄국)가 협력하여, 불법자금의 피난처를 없애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로서 불법수익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은닉 자산의 체계적이고 시기 적절한 회수를 위해 개발도상국 및 금융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또한 자산회수와 관련한 정책분석, 역량구축 연구 등도 제공한다.

13) 채굴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천연자원의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국제적 기준, 석유, 가스, 광물 등 채굴산업의 투명성을 개선하여 동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14) 조세 목적의 투명성과 정보 공유 글로벌 포럼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교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로 조세 피난처(tax haven) 문제를 다루던 OECD 산하 글로벌포럼을 2009년 9월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독립기구로 개편한 것이다. 조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투명성 및 정보 교환 기준 이행을 보장하는 제 1의 국제기구로서, 강화된 동료검토 과정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약속한 기준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15) BEPS

세금잠식 및 소득이전. 다국적 기업 등이 자국과 외국의 조세규정이 다른 점을 악용하여 세금을 편법으로 내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세수, 과세주권, 조세형평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BEPS 문제는 한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제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OECD가 BEPS관련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16) 국경 없는 세금 조사관

OECD의 핵심적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조세와 개발” 프로젝트 내 ‘OECD Task Force on Tax and Development’에서 추진된 이니셔티브. 개도국들이 다국적기업 세무조사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전문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 재정위원회와 개발협력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하며, 국제적인 세무조사 전문성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수요와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본 작업에 있어 개발도상국 혹은 그들의 지역 네트워크의 참여를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국가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어야 함을 요청한다. 우리는 ‘조세 목적의 투명성과 정보 공유 글로벌 포럼(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¹⁴⁾의 작업을 포함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을 환영하며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¹⁵⁾에 있어 G20을 위한 OECD의 활동을 고려한다. 우리는 조세 행정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한다. 우리는 역량 강화를 포함한 IMF의 노력과 OECD의 “국경 없는 세금 조사관(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¹⁶⁾ 이니셔티브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을 주목한다. 우리는 국가의 다른 수요에 기반하여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및 남남협력을 통한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29. 우리는 국제 조세 문제 관련 국가 조세당국 간의 포괄적 협력 및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 조세협력에 관한 UN 전문가 위원회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¹⁷⁾의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해당 위원회의 효과성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자원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일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우리는 회의의 빈도 수를 연간 2 회로 증대할 것이며, 각 회의는 4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조세문제에 대한 정부간 고려 증진의 관점에서 ‘조세문제 국제협력에 관한 특별회의 (Special Meet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ax Matters)’를 통해 경제 사회 이사회와 위원회의 참여를 늘릴 것이다. 위원회의 회원들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직접 보고할 것이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분과 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권한을 다할 수 있도록 자발적 신탁 기금을 통해 위원회와 부속기구를 지원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위원회 회원은 정부에 의해 후보로 지목될 수 있으며 적절하고 공정한 지리적 분배를 반영하고, 다른 세금 시스템을 대표할 수 있는 세금 정책 및 행정 전문가의 역량을 통해 행동할 수 있다. 회원은 회원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무총장에게 의해 임명될 것이다.

30. 우리는 적절한 기타 독립 감독 기관과 함께 최고 감사기관과 같은 국가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예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동등한 참여를 증진시키고 성인지 예산 편성과 추적을 촉진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투명한 공공 조달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거버넌스와 정부 서비스의 품질 개선의 목적과 함께 투명성, 책무성 및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향상시키는 공개 정부 파트너십(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노력에 주목하는 바이다.

31. 우리는 국가적 상황에 맞추어 조세 개혁과 가난하고 영향을 입은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의

개발에 있어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그들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해를 끼치는 보조금 단계적 철폐를 포함하여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2. 우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비 전염성 질병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에 주목한다. 이러한 비용은 특히 소규모 도서국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우리는 예방 및 규제에 관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담배에 대한 가격 및 세제조치가 담배 소비와 보건으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국가들에게 개발재원마련을 위한 수입원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33. 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및 지역 개발 은행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특히, 건전한 대부 프레임워크와 적절한 사회 환경 안전장치 준수에 기반하여, 상업 은행은 완전히 참여하지 않고 큰 재정격차가 존재하는 신용 시장 부문에 있어 그러함을 주목한다. 이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마이크로·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프라, 에너지, 농업, 산업화, 과학기술혁신 등의 분야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국가·지역 개발 은행들이 민간부문이 매우 위험회피적이었던 금융위기 동안, 가치 있는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인지한다. 우리는 국가·지역 개발 은행들이 이러한 분야에 그들의 기여를 확대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관련 국제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에게 개도국 내의 이러한 은행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34. 우리는 나아가 인지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출과 투자가 종종 적절한 기술, 과학기술 역량, 자원 및 지원이 부족한 준국가단위에 맡겨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지방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를 약속한다. 우리는 개도국, 특히 최빈국과 소규모도서국들의 도시 및 지역 당국들이 회복력 있고 환경보전적인 인프라(에너지, 수송, 물과 위생 등)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물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지방 정부들이 적절하게 수익을 동원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맥락 안에서 국가적·지역적 개발 계획을 강화함으로써, 포용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향상하고, 도시 도시근교-농촌 간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관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곳엔 지방 당국의 필수 투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채시장을 설립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통화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와 같은 위험완화 메커니즘을 통해, 금

17) 국제 조세협력에 관한 UN 전문가 위원회

ECOSOC의 산하기구로, 국가간 조세협력 문제를 다루고 국제조세이슈에 관련한 적절한 평가나 제언, 권고 등을 한다. 특히 개도국의 입장에서 조세문제를 논의하는 특징이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UN모델이중과세협약(UN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양자간 조세 조약 협상 매뉴얼(Manual for the Negotiation of Bilateral Tax Treatie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관련하여 검토를 계속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핵심 업무이다.

18) 센다이 프레임워크

2005년부터 UN 세계재해경감의 전략적 계획이자 지침이 되어온 호고행동계획(HFA)의 2015년 종료에 따른 후속 전략계획이다.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 시에서 개최된 UN재해경감총회에서 187개 회원국 대표단이 센다이 재해경감 전략계획(센다이 프레임워크)을 채택했고, 세계재해경감 7대 목표, 4대 우선 조치, 13개 지도원칙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2030년까지, 재해에 의한 사망자와 피해자 수를 대폭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는 재해의 직접적 경제손실을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담았다. 새로 수립된 센다이 재해경감 전략계획(Sendai Framework for DRR)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세계 재해경감의 전략적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용기관과 개발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식수 및 위생 관리 개선 등과 같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들에 있어 지역커뮤니티의 참여를 장려할 것이다. 2020년 내에, 우리는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재난 회복력 등을 목표로 한 통합 정책들과 계획들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도시 및 거주지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¹⁸⁾에 의거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전체적인 재난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외부충격의 예방, 적응, 완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역 역량을 지원할 것이다.

B. 국내외적 민간기업과 재원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business and finance)

35. 민간기업의 활동 및 투자, 혁신은 생산성과 포괄적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있어 주요한 동력(drivers)이다. 우리는 마이크로기업부터 협동조합, 다국적 기업에 이르는 민간 부문의 다양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모든 기업들이 그들의 창의성과 혁신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들이 개발 과정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에 투자하며, 더욱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으로 전환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몬테레이 이후, 국내 민간 활동과 국제 투자에서의 상당한 성장을 환영한다. 민간 국제 자본 흐름, 특히 해외 직접 투자는 안정적인 국제 금융제도와 함께 국가적 개발 노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부문들에 투자 격차가 존재함을 주목한다. 해외 직접 투자는 개발도상국 내 소수 부문들에만 집중되어 있고 종종 가장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지나치며, 국제 자본 흐름은 단기지향적이다.

36. 우리는 민간 부문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지속 가능한 실천들을 이행하고, 장기적 품질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함하여 공공의 목표와 민간 부문이 보다 잘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적절한 곳에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것이다. 공공정책은 기업이 정신과 활기찬 국내 기업 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준에서의 가능한 여건과 법적 프레임워크 창출을 필요로 한다. 몬테레이(Monterrey)는 우리에게 적절한 계약 집행, 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함께, 안정적인 거시 정책과 제도에 포함되는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구축을 맡겼다. 많은 국가들이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우리는 국가 개발 정책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책과 기준 및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함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 부문 투자를 위한 국내외적 여건 추진과 창출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37. 우리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¹⁹⁾, ILO의 노동 기준,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및 주요 다자간 환경적 합의들과 같은 관련 국제 기준 및 합의에 의거하여 노동권과 환경 및 보건 기준을 보호하는 한편, 역동적이고 잘 작동하는 기업 부문을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그들 활동의 환경적·사회적·거버넌스적 영향을 고려한 핵심 사업 모델을 받아들이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투자수익을 비금융적 영향과 결합한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를 장려한다. 우리는 자율적이며 의무적인 규칙 간의 적절한 균형을 결정한 국가들과 함께, 환경적·사회적·거버넌스적 요소들을 기업 보고와 결합하는 등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들이 책임 있는 사업과 투자를 위한 원칙들을 채택하는 것을 장려하며,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의 노력들을 지원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기업과 금융에 대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조화하고, 양성평등 관련 포함 격차들을 발견하고, 규칙준수를 위한 메커니즘 및 인센티브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38. 우리는 소액금융부터 국제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중개에 대한 탄탄한 위험 기반 규제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일부 위험 완화 정책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마이크로·중소기업들의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등 잠재적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의 정책과 규제 환경이 적절한 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시장안정성을 지원하고, 균형 있는 방식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촉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장기 실적 및 지속가능성 지표에 맞춰 조정되고 과도한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투자체인(investment chain)을 따라 인센티브를 증진하는 자본 시장을 적절한 곳에 규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들을 기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9.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통합의 핵심이 되는 금융이해(financial literacy)를 비롯하여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 우리는 모두가 정식 금융 서비스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자문과 함께, 우리의 금융포용 전략들을 채택하거나 검토할 것이며, 국가 우선순위 및 법률에 맞춰 금융포용을 금융규제 내 정책 목표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금융서비스 및 정보 접근 관련하여 장벽에 직면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업은행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소액금융기관, 개발은행, 농업은행, 이동통신사업자, 에이전트 네트워크, 협동조합, 우편은행 및 저축은행을 적절하게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모바일뱅킹, 결제플랫폼, 디지털 결제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도구들의 사용을 장려한다. 우리는 **금융포용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²⁰⁾ 및 지역기구들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들과 지역들 간의 동료학습과 경험공유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UN개발시스템을 통하는 것을 포

19)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국가 및 기업의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실행방안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정책·규제·판결을 통해 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 인권존중 및 인권에 대한 불리한 효과 해결에 관한 기업의 책임, 효과적인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책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성 확대의 3대 축으로 구성된다.

20) 금융포용을 위한 연합(AFI)

개도국 및 신흥국의 재정정책 담당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적절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독일국제협력공사(GIZ)가 관리한다.

21) 여성임파워먼트원칙

여성임파워먼트원칙은 기업에게 어떻게 업무현장, 시장 및 커뮤니티 내에서 여성이 스스로 권한부여(empower)하는지 안내해줄 수 있는 원칙들을 말한다. 이는 유엔 성평등 단체(The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와 UN여성, UN 글로벌컴팩트 간의 협력의 결과물이며, the Calvert Women's Principles(2004년 사회책임기금인 Calvert Group가 발표한 여성에 대한 권한부여, 진보 및 투자에 중점을 둔 첫 번째 글로벌 행동강령)을 차용했다. 본 원칙의 개발은 2009년 3월 국제 다자이해 관계자 컨설팅을 포함하며, 2010년 3월 국제 여성의 날에 마침내 발표하였다.

함하여, 개도국의 역량개발 강화를 약속하며, 금융포용 이니셔티브들 간의 상호 협력을 장려한다.

40. 우리는 이주자들이 송출국·수용국·목적국의 포괄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미친 긍정적 기여를 인정한다. 절반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액은 전형적으로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임금들이며, 주로 수취가정 필요의 일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해외직접투자, ODA, 기타 공공 개발 재원들과 같은 국제적인 금융흐름과 동일시 될 수 없다. 우리는 송출국 및 목적국들에 있는 이주자들과 가족들에게 적절하고 알맞은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주자들의 송금액의 평균거래비용을 2030년까지 거래금액의 3%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적은 양의 송금과 높은 비용 통로에 있어 송금 비용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적절한 서비스 공급 유지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송금통로도 5%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국경을 넘은 송금이전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은행 출금 서비스 동향과 같은 송금의 지속적인 흐름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당국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이용하는 비 은행권 송금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규제 당국간의 조정을 증대시킬 것이며, 경쟁력 있고 투명한 시장 조건 촉진을 포함하여 송출국과 목적국 간의 더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한 송금 조건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금융이해와 금융포용을 촉진하며, 정보 수집을 개선할 것이다.

41. 우리는 정치·경제적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에 있어서, 여성과 여아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 및 여성이 경제 내에서 완전한 참여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에 전념한다. 우리는 토지 및 다른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 신용, 상속, 천연 자원, 신 적정기술 등을 포함한 경제적 자원들에 대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개혁과 입법에 착수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민간부문이 직장에서의 학대와 차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동일 노동 혹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동등한 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 양성평등의 진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한다. 우리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 의해 수립된 여성임파워먼트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²¹⁾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를 지지하며, 여성소유 회사와 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를 독려한다.

42. 우리는 자선기부금의 급격한 성장과 자선사업가들이 우리의 공통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만든 상당한 규모의 금융적·비금융적 기여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자선기부자들의 혁신과 위험감수를 위한 유연성과 역량, 그리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추가적인 자원 마련 능력을 인정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존에 이미 기여를 해온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자선행위자들, 정부, 그리고 다른 개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자선활동의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선기부자들이 지역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적 정책 및 우선순위들과 일치시킬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또한 자선기부자들이 투자기준에 있어서 이윤과 비금융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임팩트 투자를 통해 그들의 기부를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보도록 장려한다.

43. 우리는 마이크로 및 중소기업, 특히 여성소유의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이크로 및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증가를 장려하기 위하여, 금융 규제책들은 담보 대체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자본 요구조건에 대한 적절한 예외를 마련하거나,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진입 및 출구비용을 줄이거나, 소액금융기관들이 예치금을 받음으로써 저축을 동원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우리는 공공 연수 프로그램과 신용조사기관의 설립을 포함하여, 비용 효율적인 신용평가에 착수하는데 필요한 금융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쓸 것이다. 국가개발은행, 신용조합, 그리고 타 국내 금융기관들은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 개발 은행들이 마이크로 ·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한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하여, 산업전환 부문 등에 자금 지원을 증진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본 영역에서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및 타 이니셔티브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지역적 · 글로벌 수준에서의 역량 구축과 지식공유 증대를 장려한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공공 파트너와 함께 하는 개발지향적 벤처자본 기금, 혼합금융, 위험완화도구, 적절한 위험관리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춘 혁신적 부채 기금 구조 등과 같은 새로운 투자수단들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역량 구축을 강화할 것이다.

44.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 왜곡적 조건의 작물 보험을 포함하여, 적절한 곳에 국내 자본 시장 특히 장기채권 및 보험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우리는 또한 감독, 청산, 결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 시장이 개별적 시장 규모가 작아 얻을 수 없었던 규모와 깊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다자간 개발 은행에 의한 국내 통화 형태로의 대출 증가를 환영하며, 이 분야에서의 더 큰 성장을 장려한다. 우리는 개발은행들이 다각화를 포함하여, 모든 위험 관리 도구들을 사용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지난 15년간 국제적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특성이 진화되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몇몇 개발도상국 내 자본 시장에서 현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것과 관련하여 변동성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 특히 최빈국들, 내륙국들, 소규모도서국 내 국내 자

본 시장 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지식공유, 기술원조 및 데이터공유 등을 위한 지역적·지역간·글로벌 포럼들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의 역량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45. 우리는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하는 직접투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여도를 인정하며, 이는 특히 프로젝트들이 국가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일치할 때 그러하다. 정부정책들은 특히 개발도상국 내의 마이크로, 중소기업 등의 현지 기업의 지역·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통합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자들과의 연계 구축 등을 통하여, 노하우이나 기술과 같은 해외 직접 투자로부터의 긍정적인 스킬오버(spillovers)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투자 촉진을 장려하고, 다른 유관 기관들이 프로젝트 사업 준비에 집중하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생산과 소비의 지속 가능한 패턴, 구조전환과 지속 가능한 산업화, 생산적 다각화와 농업을 촉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들을 우선화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재정·기술적 지원과 역량 구축, 본국(home)과 주최국(host) 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노력들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 특히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도서국, 분쟁국 혹은 분쟁 이후의 상황에 놓인 국가들을 위한 해외 직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및 새로운 금융기구 등을 통한 보험과 투자보증의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
46. 우리는 많은 최빈국들이 투자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 다양화에 도움이 되는 해외직접투자로부터 크게 열외로 취급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최빈국들을 위해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기로 결의한다. 우리는 국제투자보증기구(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를 통하여, 최빈국들로부터 요청 받은 대로 프로젝트사업 준비, 계약협상, 투자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지원, 투자시설과 관한 정보 이용, 위험보험과 보증 등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소규모도서국들이 그들 경제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국제 신용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최빈국들은 그들의 여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내륙국, 소규모도서국, 많은 중소득국들,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 격차(financing gap)와 낮은 수준의 직접투자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 내에 더 큰 국제 민간 자금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메커니즘과 파트너십의 활용을 권장한다.
47. 우리는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인프라 내 민간 투자에 장애가 존재함을 인식한다. 불충분한 투자의 부분적 원인은 다수의 장기 사업에 투자하기에 반드시 적절하지만은 않은 민간 부문 인센티브 구조와 함께, 부적절한 인프라 계획과 투

자가치가 있는 잘 준비된 사업의 부족,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 등이다. 이러한 제약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국내 여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회복력 있는 양질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도입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타당성조사, 복잡한 계약의 협상, 프로젝트 관리 등을 포함하여 개별 이행 가능한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들 역시 계획을 구체적인 프로젝트 파이프라인(project pipelines)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계획**(African Union's Programme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²²⁾에 주목한다. 우리는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인프라 대출 감소를 우려한다. 우리는 기준제정기구에게 신중한 위험부담과 확고한 위험 통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장기 투자를 권장할 수 있는 조정들을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연금기금과 국부펀드와 같은 큰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장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비율을 특히 개도국 내 인프라에 할당하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보상구조와 성과기준의 검토와 같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48. 우리는 개발은행, 개발 금융기구를 통한 인프라 파이낸싱, 민관협력, 양허성공공재정과 비양허성민간 재정을 결합하는 혼합금융과 같은 도구 및 메커니즘,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전문지식, 특수목적회사, **비 소구프로젝트금융(non-recourse project financing)**²³⁾, 위험 완화 수단, 공동 출자 기금 구조 등을 포함한 인프라 자금 마련에 있어 공공 및 민간 투자가 핵심 역할을 수행함을 인지한다. 민관협력을 포함한 혼합금융 수단들은 투자고유위험(investment-specific risks)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적·국가적·준국가적 정부 정책들 및 우선순위들이 주도하는 핵심 개발 부문들을 아우르는 추가 민간 부문 자금마련을 장려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혼합 금융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혼합금융도구의 적합한 구조와 사용이 세심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민관협력 내 혼합금융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들은 위험을 공유하고 공평하게 보상받아야 하며, 명확한 책무성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사회적·환경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 계약 협상, 관리, 회계, 우발채무를 위한 예산 수립 등 관련 포함하여, 민관협력을 시작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민관협력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문서를 마련하고 채택할 때, 포괄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토론의 장을 열 것이며, 지식기반 구축 및 지역적·글로벌 포럼을 통해 교훈을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

49. 우리는 에너지 인프라와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2030년까지 모두에게 이용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현대식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에너지 효율과 보존율을 2배로 늘릴 것이다. 우리는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

22)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계획

교통, 에너지, 국경을 초월한 물(Transboundary water), 전자/정보통신 기술 네 영역을 다루는 멀티섹터프로그램으로서, 향상된 지역 인프라를 통해 아프리카의 대륙통합을 용이하게 하는데 전념한다. 본 계획은 효율성증진, 성장가속화, 세계경제로의 통합가속화, 생활수준 개선 등을 통하여 국가들이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23) 비 소구프로젝트금융

일반적인 대출은 유사시 채권확보의 수단으로서 차주나 보증인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무한책임(Full-Recourse)을 지우는데 반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의한 대출은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이 프로젝트의 내자 가치와 예상 현금수입의 범위 내로 한정(Non-Recourse)되고, 출자자 등의 일정 범위 추가부담으로 제한(Limited Recourse)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의 성패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출은행은 차입자와 사업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경영이 나빠지는 경우에도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프로젝트 내에서 해결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금융구조를 비소구(non-recourse finance)이라고 한다. 물론 실제거래에서는 대출은행과 프로젝트사업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위험배분의 조합이 활용되므로 완전한 비소구 방식은 거의 없고, 사업주가 여신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한 소구(limited recourse)가 일반적이다.

24) 사무총장의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니셔티브

2010년 유엔이 세계은행과 함께 발족한 이니셔티브로서, 2030년까지 현대적 에너지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 2배 증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 2배 확대의 목표를 설정했다.

25) 파워 아프리카

2013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족한 이니셔티브로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전력에 대한 접근성을 2배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 세계 기술 및 법률 전문가, 민간영역, 정부를 한데 모으고자 하였다.

26) NEPAD 아프리카 파워 비전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의 계획조정기술단체로서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PIDA(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계획)에 기반하여 발족한 것으로, 아프리카의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일관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확실하고 적절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장기계획이다. 본 비전은 주로 PIDA 하에서 아프리카의 주요 에너지프로젝트의 실행을 추진하고 가속화하려고 한다.

27) 글로벌재생에너지 도서네트워크

2013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는 정부간 기구)가 도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의 가속화를 돕기 위해 발족한 네트워크이다. 지식공유, 우수사례 공유, 도서국에서의 비용효과적인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혁신적 해법 추구 등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한다.

공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든 개발 도상국들 특히 최빈국들과 소규모도서국들에게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것의 지역적 허브, 모든 국가수준에서의 행동의제와 투자계획의 개발을 포함하여 '사무총장의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니셔티브(the Secretary-General's Sustainable Energy for All)'²⁴⁾를 유용한 프레임워크로써 환영한다. 우리는 시장기반 이니셔티브, 파트너십, 개발은행의 활용을 통하여, 2020년까지 연간 투자액 천 억 달러 이상을 모으기 위한 통합된 잠재력과 함께 그것의 권고사항들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소규모도서국, 최빈국, 내륙국의 특수한 취약성 및 필요를 인식하며,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²⁵⁾, NEPAD 아프리카 파워 비전(NEPAD Africa Power Vision)²⁶⁾, 그리고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의 글로벌재생에너지 도서네트워크(Global Renewable Energy Islands Network; GREIN)²⁷⁾를 환영한다.

C. 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50. 국제 공공 자원은 국내에서 공공 자원을 동원하고자 하는 국가들, 특히 한정된 국내 자원을 가진 최빈국과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노력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의 야심찬 여젠다들은 양허성 및 비양허성 자원마련을 포함하여 규모 확대 및 효과적인 국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공 예산 편성 및 역량에 중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는 몬테레이(Monterrey) 이후, 모든 형태의 국제 공공 자원 증가를 환영하며, 포스트 2015 개발 의제를 지지하는 우리의 개별적 노력들을 강화시킬 것을 결심한다. 우리는 국제 개발 협력 강화 및 효율성, 투명성, 영향력 및 결과 극대화를 위한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야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 협력의 영향 증진을 위한 우리의 개별적 노력에 적용되는 원칙들을 정교화하는 데 있어서의 달성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우리 공통의 이해를 강화하고 지식 공유를 향상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화를 강력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다.

51. 우리는 몬테레이 이후, ODA 규모의 증가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이 그들이 약속한 ODA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ODA 공약들의 달성이 매우 중요함을 반복한다. ODA 공여국들은 GNI 대비 ODA 0.7% 목표치와 GNI 대비 ODA 비율 0.15~0.20%를 최빈국에 지원하는 공약을 포함한 개별 약속들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해당 목표를 이행하거나 혹은 초과 달성한 소수의 국가들에 의해 힘을 얻는다. 우리는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ODA 증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ODA 목표치를 향한 추가적인 구체적 노력을 촉구한다. 우리는 포스트 2015 의제 기간 내

에 GNI 대비 ODA 비율 0.7%를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공약을 재확인 및 단기간 내 최빈국에 대한 GNI 대비 ODA 비율 0.15~0.20% 목표치를 공통적으로 달성하고, 포스트 2015 의제 기간 내에 0.20% 목표치에 도달을 약속한 유럽연합의 결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ODA 공여국들이 최빈국에 대한 GNI 대비 ODA 비율을 최소 0.20% 목표치에 맞추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52. 우리는 양허성이 높은 자원들을 가장 필요로 하며, 다른 자원들을 동원할 능력이 가장 적은 국가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의 중요함을 인식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최빈국에 대한 ODA 할당량이 감소하고 있음에 큰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감소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에 전념한다. 우리는 ODA의 최소 절반을 최빈국에 할당하는 국가들로부터 힘을 얻는다.

53. 우리는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원조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등을 통해 ODA 공약 이행을 위해 더 큰 국내적 지원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협력국들로 하여금, ODA가 개발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달성된 진전을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우리는 국가 예산 배분 과정에 맞춰, 미래 개발 협력에 관한 명확성,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전향적 발표를 권장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성 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자원 배분을 추적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54. ODA를 포함한 국제 공공 재원의 영향력 있는 사용은 다른 공공 및 민간 자원들의 추가적인 동원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조세 징수 개선을 지원할 수 있고, 국내 여건 강화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혼합 및 공동출자금융과 위험 완화를 통하여, 특히 민간 부문 개발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기타 투자를 위한 추가적 재원을 발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55. 우리는 ODA 측정의 현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총공적개발지원(TOSSD)'에 관한 공개적이고 포괄적이며 투명한 토론을 열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조치들도 기존의 공약들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56. 남남협력은 남북협력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 요소이다. 우리는 그것의 증대된 중요성과 상이한 역사, 특이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남남협력이 그들의 공유된 경험과 목표를 기반으로 남반구의 사람들과 국가들 간의 연대의 표현으로서 보여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국내정세와 상호이익에 있어 국가주권, 주인의식 및 독립성, 평등, 무조건성(non-conditionality), 비간섭을 존중하는 원칙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28) 남남협력에 관한 UN 고위급 회담의 나이로비 결과 문서

UN고위급회담 나이로비결과문서는 몇몇 개도국의 기록적인 경제성장 및 지역 공동시장의 설립 등을 계기로 남남협력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식하면서 200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문서이다. 문서에서는 남남협력이 연대에 기초한 대등한 존재 간의 파트너십으로서 ODA와 다르며, 국가주권 및 오너십에 대한 존중원칙을 방침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57. 우리는 빈곤 근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남협력의 증대된 기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자발적으로 남남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남남협력에 관한 UN 고위급 회담의 나이로비 결과 문서(the Nairobi outcome document of the High-Level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outh-South Cooperation)²⁸⁾ 조항에 의거하여 개발 효과성을 향상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우리는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들을 개발협력에 도입하는 수단으로, 삼각협력 강화에 전념한다.

58. 우리는 합의된 개발협력 효과성 원칙 고수를 포함하여, 개발협력의 질, 영향, 효과성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들 및 공공 재정에서의 기타 국제적 노력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특히 최빈국 및 가장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위해 분절화 감소·원조의 비 구속화 촉진을 포함하여 국가적 우선순위와 함께 활동들을 일치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 오너십(ownership)과 결과 지향을 촉진, 국가 시스템을 강화, 적절한 곳에 프로그램 기반 원조(PBA)활용, 개발협력을 강화하며, 거래비용을 줄이고, 투명성과 상호 책무성을 강조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게 중기적으로 계획된 지원에 관해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한 지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을 더욱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사회이사회의 개발협력포럼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추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보완적 방법으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과 같은 타 유관 포럼들의 노력 또한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부가세와 수입과징금 상환 포기를 시작으로, 정부간 원조로서 전달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면세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

59. 우리는 기후변화협약과 당사국 총회(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협상할 주된 국제적, 정부간 포럼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기후대책에 관한 리마 선언을 환영하며, 우리는 2015년 파리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가능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상이한 국가적 상황에 비추어 개별적 능력을 반영한 야심찬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당사국 총회의 공약에 고무되었다.

60. 우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글로벌 도전과제를 포함하여, 국제 협약 하의 기존의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저 탄소 및 기후 회복력 개발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양자간 및 다자간 뿐만 아니라 대체 재원을 포함한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자원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의 필요를 다루기 위하여, 유의미한 감축 행동과 이행의 투명성 맥락에서,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다양한 재원으로 부터 연간 천억 달러를 공동으로 동원하기로 한 목표에 약속한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기후 자원 보고를 위한 투명한 방법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기후변화협약의 문맥 안에서 진행 중인 노력들을 환영한다.

61. 우리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성공적이고 시의 적절한 초기 자원 동원 절차를 환영하며, 그것을 가장 큰 전용 기후기금으로 만들고 협약의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기금의 공식적인 재원 보충 절차에 관련한 결정뿐만 아니라, 늦어도 2015년 3차 회의 전까지 사업 및 프로그램 승인에 관한 결정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운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증여등가액 기준(grant equivalent basis)에 있어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간의 50:50 균형을 목표로 하는 것과 최빈국, 소규모도서국,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취약국들에게 적응(adaptation) 관련 할당량의 최소 50%를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기후 재원에 대한 접근 역량과 관리에 있어 남아있는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62.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3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개발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재원마련에 있어 기후 및 재난 회복력을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잘 계획된 조치들이 기후변화에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지역적·글로벌 혜택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재난 위험을 관리하고 관련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적·지역적 행위자들의 역량을 강화 및 국가들이 필요 시 국제 원조에 의지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노력 등에 투자하는 것에 전념한다.

63. 빈곤 근절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생물 다양성과 관련 요소들의 지속 가능한 사용이 대단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들의 2011~2020 생물다양성 글로벌 전략 계획(the global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for 2011~2020)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²⁹⁾ 이행을 환영하며, 모든 당사국들에 2016년 멕시코에서 있을 13회 당사국 총회에 참석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 사막화·가뭄·황사·홍수 방지, 훼손된 땅과 토양 회복,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등을 포함하여,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모든 재원으로부터 모든 수준의 재원을 동원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³⁰⁾ 당사국들의 공약 지원과 이행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프리카 연합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African Union Great Green Wall Initiative)³¹⁾와 같은 회복노력과 보존의 진전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고, 그들의 국가적 생물다양성 전략들과 조치들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전념한다.

64. 우리는 해양, 바다, 연안 지역이 지구 생태계의 통합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반영되었듯이, 국제법이 해양과 그것의 자원들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줄

29) 2011~2020 생물다양성 글로벌 전략 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2010년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채택된 전략계획 문서로서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뿐 아니라 전체 유엔체계 및 생물다양성 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파트너에 대해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당시 회의에서는 전략계획과 함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든 정부와 사회에 걸쳐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 감소의 근본 원인에 대처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 감소와 지속가능한 이용 장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가 모두에게 주는 혜택 강화 등의 목표를 담고 있다.

30)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가뭄과 사막화로 인한 피해지역에 재정적·기술적 측면의 국제적 노력을 통한 사막화 방지와 나아가 지구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여 1994년 채택, 1996년 발효된 협약이다.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 이행·소지역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 증진·지역사회 간 정부 간 및 비정부기구 간의 협력이라는 기본원칙을 포함하여 선진국 및 개도국의 공동의무와 선진국의 의무, 재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서명하고 1999년에 비준하였다.

31) 아프리카 연합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

사하라사막 및 사헬지대의 토지황폐화와 사막화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지역의 빈곤 및 토양 황폐화 문제를 다루고 세네갈에서 지부티에 이르는 사하라사막 남부지역에 "나무 벽"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식한다. 우리는 빈곤 근절에 대한 기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식량안보, 지속 가능한 거주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양 및 바다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존의 중요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생물 다양성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양생태계의 건강함과 생산성, 회복성을 보호하고 복구하며,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가 그것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한다. 또한 국제법에 맞춰,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가지 측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을 관리하는데 생태접근법과 예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에도 주력한다.

65. 우리는 전세계의 온도 증가,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및 기타 기후변화들이 많은 최빈국들과 소규모도서국들을 포함한 해안지역 및 저지대연안국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극심한 기후변화가 수 백만 명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위협들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 강화에 전념한다.

66. 개발재원은 사회적 · 환경적 · 경제적 취약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국가들로 하여금 분쟁이나 자연재해와 관련된 만성적 위기 상황들을 방지하거나 맞설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자연재해와 복합적인 비상상황들을 관리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더욱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이며, 적절하고 비용효율적인 접근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재원과 인도적 자원 간의 일관성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더 나은 위기관리와 예방 및 완화대책 구축을 위하여, 혁신적인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증진하는데 힘쓴다. 우리는 국가적 · 지역적 행위자들이 재난 위험 감소를 관리하고 재원을 지원할 역량을 강화시키며, 국가들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제원조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투자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적 자원마련에 관한 고위급패널(High-level Panel on Humanitarian Financing) 확립 및 2016년 5월 26~27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있을 세계인도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를 주목한다.

67. 우리는 분쟁 및 분쟁 후 국가의 항구적인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대한 주요한 도전을 인식한다. 우리는 평화구축 자원 마련 격차와 평화구축기금(Peacebuilding Fund)의 역할을 인식한다. 우리는 분쟁 후 맥락에서 국가들의 평화구축 및 개발 자원 이용을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구축과 개발 모두에서 국가의 주인의식 및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분쟁영향국 및 분쟁 후 국가의 간소화된 메커니즘, 국가시스템의 사용 및 강화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 국가기관의 역량강화를 우선순위로 하여 원조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68. 우리는 최빈국 및 내륙국, 소규모도서국들이 금융위기나 자연재해, 공중보건 비상 사태 등의 다양한 종류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역량을 구축하는 노력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기금이나 다른 방법 등을 통해 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환영한다.

69. 우리는 몬테레이합의 이후, **혁신적 개발자원을 위한 리딩그룹**(Leading Group on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³²⁾ 등에 의해 추가적인 자원마련의 혁신적 원천 및 방법에 대한 지원을 개발하고 동원하는데 이뤄진 진척을 환영한다. 우리는 더 많은 국가들이 개도국에 지니친 부담을 주지 않는 혁신적인 메커니즘, 수단, 지원 방식을 자발적으로 실행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더 다양한 개발 수요를 고심하기 위해 국제백신금융기금(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sation)과 같은 기존의 메커니즘이 반복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하기를 권장한다. 우리는 또한 녹색채권, 백신채권, 삼자간 대출과 **풀메커니즘**(Pull mechanisms)³³⁾ 및 탄소가격 메커니즘과 같은 공적 및 민간자원을 결합하는 모델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혁신적 메커니즘을 탐색하길 권장한다.

70.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자원을 조달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있어 다자간개발은행 및 기타 국제개발은행들의 상당한 잠재력을 인식한다. 다자간개발은행은 금융 및 경제충격, 자연재해 및 세계적 유행병에 대응하는 국가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절하게 양허성 조건 등을 포함한 경기 조정형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다자간개발은행 및 기타 국제개발은행이 기여금 및 자본금을 활용 (leveraging)하고 자본시장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양허성 및 비양허성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자원을 계속 제공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개발은행들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과 일관되게 그들의 자원 및 대차대조표 이용을 최적화하여 활용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post-2015 개발의제를 지지하는 정책을 개발 및 업데이트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다자개발금융기구들이 그들의 역할 및 규모와, 그들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적응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길 권고한다.

71. 우리는 중소득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여전히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지금까지 달성한 것을 반드시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험교류와 조정개선 및 UN 개발 시스템, 국제금융기구, 지역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집중적이고 더 나은 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도전을 고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이 개별국가에 대한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정책 및 전략에 중소득국가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발수요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중소득국가의 구체적인 수요를 고려하면서, ODA 및 여타 양허성 재원이 많은 중소득국가에게 여전히 중요하고, 목표된 결과를 위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32) 혁신적 개발자원을 위한 리딩그룹
혁신적 자원에 대한 우수 사례를 교환하고 논의하기 위해 2006년 형성된 비공식 플랫폼이다. 현재 64개의 회원국, 국제기구, 주요 재단 및 NGOs로 구성된 리딩그룹은 지속가능개발과 환경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자원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그룹은 또한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다루는 혁신적 자원을 확인하고, 각각의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33) 풀메커니즘
풀메커니즘(Pull mechanisms)은 민간부문이 설정된 목표를 향해 노력하도록 촉진하는 방식으로써, 증여모델을 활용하는 전통적 개발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개발 목표에 대한 특정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구체적 투입과 절차보다는 사전에 확정된 결과 달성에 대해 보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 달성에 포함된 전략 및 기술에 대한 선호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34) 세계은행의 소규모도서국 예외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점을 넘어서 몇몇 소규모도서국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회(세계은행의 제휴기관으로서 저소득국의 경제개발 및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세계은행보다 더 용이한 조건으로 최빈개도국에게 차관을 지원하는 기구, IDA)의 호의적인 차관기간과 재원수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예외를 말한다.

35) 하나로써의 이행

하나로써의 이행(Delivering as One)은 보고서 및 이니셔티브의 명칭이다. 본 보고서는 2005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유엔 패널에 의해 발행되었다. 보고서는 개발, 인도적 지원 및 환경의 영역에서 전세계에서 어떻게 유엔시스템이 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72. 우리는 또한 중소득국가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안할 필요를 인식한다. 우리는 국가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양허성 재원에 대한 접근이 감소하는 것과 국가들이 그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원천으로부터의 충분한 재원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에 주목한다. 우리는 다자간개발은행의 이해관계자들이 연속적이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졸업방침(graduation policies)을 개발하길 권장한다. 우리는 또한 다자간개발은행들이 그들의 원조가 중소득국가의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회와 도전을 가장 잘 다루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할 것을 권장한다. 이점에서 우리는 **세계은행의 소규모도서국 예외(small island State exception)**³⁴⁾를 소규모도서국의 재정 위기에 대해 주목할 만한 대응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등을 통한 위기완화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73. 우리는 최빈국의 졸업과정이 개발절차가 저해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절차가 지속될 것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조치와 결합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제 공공재원의 양허성 수준이 상업성 등과 같이 자금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성질뿐 아니라 소득수준과 기관역량 및 취약성 등 각각의 협력국의 개발수준을 고려해야 함에 주목한다.

74.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지원에 있어 충분히 재원지원을 받고, 적절하고, 일관성 있으며 효과적인 UN체계(UN system)의 비교우위 및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post-2015 개발의제의 맥락에서 UN 개발체제의 장기적인 포지셔닝에 대한 절차를 지지한다. 우리는 프로그램 국가(programme countries)에서의 UN체계의 발전을 위한 운영활동에 대한 국가적 주인의식 및 리더십과 UN의 일관성, 관련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여러 운영양식(modalities)과 접근법 중 자발적 접근법인 **‘하나로써의 이행(Delivering as one)’**³⁵⁾에 대한 추가적 절차 달성 등을 통하여 조정 및 결과를 개선하며,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와의 UN의 공동 작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75. 개발은행들은 지방채(Sub-sovereign loans)를 포함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 등에 있어 개발재원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신생 개발은행들이 국제표준에 기초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공개협의 하에 보호조치제도(safeguard systems)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며, 모든 개발은행들이 인권 및 성 평등과 여성임파워먼트 등에 대한 투명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긴급(time-sensitive) 사회 및 환경 보호제도를 수립 혹은 유지하길 권장한다. 우리는 다자간개발은행들이 장기적 인프라나 녹색채권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장기 투자자들의 자원을 이끌 수 있는 수단을 더 개발하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주요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지역적 투자가 새로운 재원조달 방식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다자 및 지역 개발금융기구가 대륙별 지역(regional) 및 **준지역(subregional)**³⁶⁾의 단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길 요청한다.

76. 우리는 진실하고 효과적이며 오래 지속되는 다자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파트너십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학습된 교훈과 이용 가능한 전문지식에 기반 하여 국가 주도의 우선순위와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그러한 파트너십을 권장 및 장려한다. 우리는 또한 파트너십이 인적 및 재정자원, 전문지식, 기술 및 지식을 동원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개발노력에 환경문제를 주류화 시키는 것과, 개도국의 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 및 양허성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글로벌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³⁷⁾의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는 개도국 특히, 최빈국과 소규모국이 이용 가능한 기금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지지하고, GEF에 대한 공공 및 민간 기여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7. 세계백신면역연합(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과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과 같은 다자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은 보건 분야에서 성과를 이뤘다. 우리는 그러한 이니셔티브 간의 더 나은 조정(alignment)을 권장하며,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기여를 향상시키길 권장한다. 우리는 국제 보건 업무에 대한 지휘 및 조직 당국으로서의 세계보건기구의 주요한 역할을 인식한다. 우리는 국민의료체계 강화 및 보편적 건강보험 성취를 위하여 모든 단계에서 국제적 조화와 우호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s)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국내 및 세계 보건 위험의 조기경보, 위험감소, 관리에 대한 국가 특히, 개도국의 역량 강화에 전념하고, 뿐만 아니라 개도국 특히, 최빈국 및 소규모도서국에서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채용, 성장, 교육 및 유지와 보건의료 재원조달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에도 전념한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³⁸⁾ 당사국들은 모든 국가에서 적절하게 협약의 이행을 강화할 것이고, 의식을 고취하고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여성과 아동 지원을 위한 글로벌파이낸싱기금(Global Financing Facility in support of Every Woman Every Child)**³⁹⁾의 예측된 기여 등과 같이, 많은 보건 이슈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추가적인 국내 및 국제적 민간·공적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환영한다.

78. 우리는 모든 남아 및 여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것은 극빈층 아동, 장애아동, 이주 및 난민아동, 분쟁취약국 및 분쟁 후 국가의 아동에 다다른 것과, 모두에게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아동들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양질의 유아기 및 초중등 교육을

36) 준지역

준지역(subregion)은 대륙별 지역의 부분으로 주로 위치에 기초한다. 유엔통계부는 유엔의 통계정보를 수집, 처리 및 배부할 때 통계를 준지역별로도 분류하게 되는데 예를 아프리카 지역(region)에서는 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등을 준지역(subregion)으로 볼 수 있다.

37) 글로벌환경기금

글로벌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은 183개의 국가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민간영역과 전지구적 환경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하는 국제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이다. 1991년 이래 글로벌환경기금은 165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는 3,9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135억 달러를 지원금으로 제공하였고, 공동재정지원으로 650억 달러를 동원하였다.

38)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TO FCTC)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감독 아래 협상된 첫번째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의해 2003년 5월 21일에 도입되었으며, 국제연합 역사상 가장 빠르고 넓게 도입된 조약 중 하나가 되었다. WTO FCTC는 국제적으로 만연한 흡연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되었고, 증거에 기초한 조약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권리를 재확인하였다.

39) 모든 여성과 아동 지원을 위한 글로벌 파이낸싱기금

모든 여성과 아동 지원을 위한 글로벌 파이낸싱 기금은 2030년까지 생식, 모성, 영아, 아동, 청소년 건강(RMNCAH)의 거대한 통섭(convergence)을 위한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협의 과정 이후에, 글로벌 파이낸싱 기금의 설립은 2014년 9월 69번째 유엔 총회 세션에서 발표되었으며, 현재 2015년 여름 발족을 목표로 사업 개발 단계에 있다. 전반적인 GFF의 목표는, 예방가능한 모성, 영아, 유아, 그리고 청소년의 죽음을 종식하는 전 지구적 노력에 공헌하는 것이다.

40)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교육 지원을 위한 국제 공조를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직으로 2002년 설립되었다. 주요 교육 공여국들은 세계의 모든 아이들에게 기초 교육 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소년 소녀들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전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을 시작하였다.

41) 발리패키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13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제 9차 각료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식품 안전을 제공하는 데에 더 많은 선택지를 허용하고, 최빈국의 무역을 진흥시키며, 개발도상국을 더욱 일반적으로 지원하면서 무역을 효율화하기 위한 결정들의 집합인 '발리 패키지'를 채택하였다. 각료들은 또한 일상적인 결정(routine decisions)을 채택하였고, 예멘을 WTO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마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⁴⁰⁾과 같은 이니셔티브의 확대 및 강화 등을 통하여 투자와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협력을 통해 개도국 특히, 최빈국과 소규모도서국에서 아동, 장애인, 성 인지적(sensitive) 교육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에 전념한다.

D. 개발동력으로서의 국제무역

(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79. 국제무역은 포용적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한 동력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에 기여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하에서의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공정한 다자무역 체계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무역자유화 촉진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한 무역체계는 생산적인 역량에 대한 장기 투자를 권장한다. 적절한 지원정책과 인프라 및 교육된 노동력과 함께, 무역은 불평등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여성역량강화 및 식량안보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80. 우리는 2013년 발리패키지(Bali Package)⁴¹⁾의 승인을 중요한 성취라고 여기지만, WTO에서 다자 무역 협상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다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WTO 회원국들이, 최빈국을 위하여 내려진 결정 및 식량안보 목적의 공적 보유주식(public stockholding)에 대한 결정, 소규모경제작업계획(Work Programme on Small Economies) 등을 포함하여 발리패키지의 모든 결정들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과 무역촉진화 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요청한다. 자신들이 그렇게 이행할 위치에 있음을 언명하는 WTO 회원국들은 최빈국 서비스 면제(least developed countries services waive) 개시에 대한 2011년, 2013년 발리 결정에 부합하고 그들 국가의 공동요구에 응하여, 최빈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통지해야 한다.

81. 우리는 무역금융에 대한 접근부족이 국가의 무역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고, 무역을 개발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WTO 무역금융 전문가그룹(WTO Expert Group on Trade Financing)이 이행하는 작업을 환영하고, WTO에 부합하는 무역금융과, 무역신용(Trade credit), 보증, 보험, 채권 매입업(Factoring), 신용장, 개도국의 마이크로 및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등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수단의 유용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중심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방법 탐색에 전념한다. 우리는 개발은행들이

시장중심 무역금융을 제공 및 확대하고, 무역금융과 연관된 시장실패를 고심하는 방법을 검토하길 요청한다.

82. 몬테레이 이후에 많은 개도국의 수출이 상당히 증가한 반면, 최빈국 및 내륙국, 소규모도서국, 아프리카 국가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세계무역에의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세계무역은 세계금융위기 이전에 보였던 상승세의 성장률로 회귀하는데 도전에 직면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개도국의 수출, 특히 **이스탄불 행동계획**(Istanbul Programme of Action)⁴²⁾에 명시된 것처럼 2020년까지 세계 수출에서 최빈국의 비중을 두 배로 만들기 위해 최빈국의 수출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 무역을 상당히 증가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무역정책에 통합할 것이다. 소규모도서국의 특별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무역 및 경제협정에 대한 그들의 참여를 강력히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소규모 취약경제의 지역 및 세계시장으로의 더 완전한 통합을 지원할 것이다.

83. 세계 무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써, 우리는 WTO 회원국이 **도하작업계획**(Doha Work Programme)⁴³⁾의 중심에 최빈국 등 개도국의 수요와 관심을 두는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⁴⁴⁾에 대한 협상을 즉각적으로 결론짓고, 개발관심사가 도하개발어젠다의 필수요소를 형성한다는 것에 대한 역점을 두는 것에 대한 노력의 강화를 요청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화된 시장접근, 균형 잡힌 규칙(balanced rules), 잘 정해진 목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이 되는 기술원조 및 역량구축 프로그램들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맞서 싸우는데 전념한다. 도하개발어젠다 지시사항의 한 요소에 따라, 우리는 WTO 회원국들이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 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지니는 모든 수출조치에 대한 규율의 제거 등을 통하여, 세계농업시장에서 무역제한 및 왜곡을 예방하거나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도하개발어젠다의 지시사항 및 **홍콩각료선언문**(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⁴⁵⁾에 따라, WTO 회원국들이 생산과잉 및 남획에 영향을 주는 특정 형태의 보조금 금지 등을 통해 어업분야의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데도 전념하길 요청한다. 우리는 WTO 회원국들이 WTO 회원을 위한 협상에 참여했던 모든 개도국들의 가입을 가속화하는 노력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을 촉구하고, 최빈국의 WTO 가입을 위한 2012 가이드라인의 강화, 간소화, 운용을 환영한다.

84.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에 따라, 개도국 특히, 최빈국을 위한 특별대우 조항의 실행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발리에서 합의된 것처럼, 특별대우 조항 실행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모니터링 수단의 수립을 환영하며, 이는 그 조항들을 강화하고,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자동적으로 만들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WTO 내 개도국 및 최빈국들의 다자무역체제로의 통합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42) 이스탄불 행동계획

이스탄불 행동계획(IpA)은 2011년 5월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4회 유엔최빈국 회의에서 이스탄불선언과 함께 채택되었으며, 빈곤퇴치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최빈국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제를 극복하는데 목적을 둔다.

43) 도하작업계획

도하라운드 시작되었을 때, 각국 장관들은 개발에 그 초점을 맞추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작업계획(Work Programme)의 핵심에 반영할 것을 결의하였다. 지난 201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참가국들은 당초 계획대로 2015년 7월까지 도하개발어젠다(DDA) 작업계획을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4) 도하개발어젠다

도하개발어젠다(DDA)는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시작한 무역협상으로 전세계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글로벌 무역 증대 촉진에 그 목적을 둔다. 2008년 이후, 농업, 산업관세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 및 무역 개선행동과 같은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도하라운드는 2001년 도하 카타르에서 장관급 미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3년 멕시코 칸쿤, 2005년 홍콩에서 열렸으며, 관련 협의가 2005년 프랑스 파리, 2007년 독일 포츠담, 2004, 2006,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45) 홍콩각료선언문

2005년 12월 13~18일에 홍콩에서 개최된 제 6차 WTO 각료회의에서 2004년 여름에 합의된 '기본골격'과 완전한 '세부원칙'과의 중간적 합의와 세부원칙 '합의 시한' 등을 명기하여 채택됐다. 협상을 완결 짓지는 못하였으나, 이 회의로 DDA 협상이 최종국면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에 시작한 DDA 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서비스 분야와 함께 2000년부터 개시되었으나 협상은 난항을 거듭, 당초 2003년 3월이라는 세부원칙 합의시한이 연기되었다.

85. 우리는 자신들이 그렇게 할 위치에 있다고 언명하는 WTO 내 선진국 및 개도국의 회원국들이 WTO 결정과 일치하도록, 모든 최빈국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세 및 무쿼터(duty-free and quota-free) 시장접근을 시의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는 2013 발리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이 채택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WTO 내 선진국 및 개도국들이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투명한 원산지 규정을 개발하는 등 최빈국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86. 우리는 WTO 회원국이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유연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하고,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TRIPS 협정이 막지 못하며,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도국에게 가격이 적절한 의약품에 대한 개선된 접근을 허락하는 TRIPS 협정의 개선안을 아직 수락하지 않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2015년 말까지 수락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최빈국을 위해 이행을 연장한 2013년 6월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최고이사결정기구(General Council)로 하여금 WTO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기를 요청한다.
87. 우리는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통합 및 상호연결성의 중요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지역협력 및 지역무역협정을 강화하는데 전념한다. 우리는 양자 및 지역무역과 투자협정 간의 일관성을 강화할 것이고, 그것들이 WTO 규칙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다. 지역통합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정책개혁을 실행하며, 영세 및 중소기업 등의 회사들로 하여금 지역 및 세계적 가치사슬에 통합되도록 하는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무역촉진화조치(Trade facilitation measures)가 만들어 내는 기여를 강조한다.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와 다자 및 지역개발은행 등의 국제사회가 아프리카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및 하위지역의 통합을 촉진하고, 특히 개도국의 소규모 산업 및 기타 기업들의 세계가치사슬 및 시장에서의 참여와 통합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및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증대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은행 등 다자간개발은행이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역네트워크 내에서 내륙국 및 최빈국, 소규모도서국을 연결하는 고리의 빠뜨린 부분을 완성하는 등 무역격차와 수송 및 통상 관련 지역인프라를 다루도록 격려한다.
88. 우리는 국제무역 및 투자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적 수준에서 보완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우호적인 국내 환경을 강화하고 무역 가능성 실현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국내 정책 및 개혁을 실행할 것이다. 우리는 개도국에 의한 가치부가에 대한 필요성과 영세 및 중소기업의 가치사슬로의 추가적인 통합에 대한 필요를 인식한다. 우리는 무

역과 개발의 통합적인 취급과, 금융, 기술, 투자 및 지속가능발전 영역에서의 상호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UN체계 내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고 강화할 것이다.

89. 우리는 국제무역법 분야에 있어 UN체계 내에서 핵심 법률 조직으로서, 국제무역법 분야에서 활동적인 국제 및 지역기관들의 법률 활동의 조화 및 협력을 증진하는 것과, 이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의 지배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노력 및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90. 무역원조(Aid for Trade)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최빈국들을 위한 무역관련 기술지원에 대한 강화된 통합 프레임워크(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⁴⁶⁾ 등을 통해 개도국 특히, 최빈국을 위한 무역원조에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협력 효과성 원칙에 따라 제공된, 최빈국으로 가는 무역원조의 증가하는 비율을 할당하는데 힘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한 개도국 간의 추가 협력을 환영한다. 생산자 및 무역가로서의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국내, 지역적, 국제 무역에 대한 여성의 평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구체적인 도전에 대해 다룰 것이다. 기술지원 및 운송, 통상 관련 실행계획의 개선은 내륙개도국이 다자무역협상에 충분히 참여하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운송 및 무역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및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수출 기반을 다양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결정적이다.

91. 투자를 보호하고 권장하는 목표는 공공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익에 대한 국내 정책 및 제도를 제약하지 않도록, 적절한 세이프가드와 함께 무역 및 투자 협정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협정들을 투명하게 실행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무역 및 투자협정에서의 기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최빈국들에 대해 양자 및 다자 채널 등을 통한 역량구축 지원에 헌신한다. 우리는 UNCTAD가 투자협정에 대한 회원국들과의 회의 및 회담에 관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계속 하길 요청한다.

92. 우리는 불법야생동물거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불법벌채 및 불법광업이 많은 국가들에게 도전임을 또한 인식한다. 그러한 활동들은 세입손실 및 부패 등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국내규제 및 국제협력의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생계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보호종의 밀렵 및 밀거래, 유험폐기물 밀거래, 광물 밀거래를 방지하는 노력에 대한 지구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심한다. 우리는 제도적 역량구축 등을 통하여, 불법 비보고

46) 최빈국들을 위한 무역관련 기술 지원에 대한 강화된 통합 프레임워크(EIF)

다자공여자간 프로그램(Multi-donor programme)으로, 최빈국들이 전 지구적 무역 시스템에서 보다 활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무역에서 공급자 제약에 대항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은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시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는 넓은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 프로그램은 현재 50개의 빈곤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23개의 공여국의 기여로 형성된 EIF 신탁 기금으로 운영된다.

47) 고채무빈국(HIPC) 이니셔티브

어떤 빈곤국도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1996년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다자간 기구와 정부들을 포함한 국제 금융 커뮤니티는 가장 무거운 부채를 가진 빈곤국들의 부채 정도를 지속 가능한 정도로 줄여주기 위해 함께 일해왔다. 2005년, 새 천년개발목표(MDGs)의 진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HIPC는 다자간부채탕감 이니셔티브(MDRI)에 의해 보완되었다.

48) 다자간부채탕감 이니셔티브(MDRI)

IMF, IDA, AfDB 세 다자간 기구에서 대출받은 저소득국가의 eligible debt(파리 클럽의 맥락에서 일년 혹은 그 이상의 만기를 두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마감일 전에 약정하는 부채)을 100퍼센트 탕감해주기 위해 제공되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자격을 갖춘 국가들이 새천년개발계획(MDGs)을 달성하는 것을 돕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

비규제 어업을 효과적으로 예방, 저지, 제거하기 위해서 어선 모니터링, 규제, 감독에 대한 역량을 또한 강화할 것이다.

E. 부채 및 부채 지속가능성(Debt and debt sustainability)

93. 차입(borrowing)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중요한 투자에 재원 조달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이다. 국가차입(sovereign borrowing)은 정부재정이 경기순환에 대해 경기 조정형(countercyclical)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하지만, 차입은 신중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몬테레이 합의 이후, 고채무빈국(HIPC) 이니셔티브⁴⁷⁾ 및 다자간부채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⁴⁸⁾를 통하여 상당한 부채감소가 그랬듯이, 강화된 거시경제 및 공공자원 관리는 국가채무위험(sovereign debt distress)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취약성의 상당한 감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많은 최빈국 및 소규모도서국, 몇몇 선진국 등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부채 위기에 취약한 상태이고, 몇몇은 위기에 빠져있다. 우리는 많은 최빈국 및 소규모도서국이 직면한 부채지속가능성의 도전이 긴급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빈국 상태를 졸업한 국가들의 소조로운 이행에 대해 부채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다.

94. 우리는 채권금융, 부채탕감, 채무조정 및 견고한 채무관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정된 정책들을 통해서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을 도와줘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HIPC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잔존하는 HIPC 자격의 국가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부채지속가능성에 대해 고심할 수 있게 하는 견고한 경제정책을 가진 비(non) HIPC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사례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채탕감을 받았거나 지속 가능한 부채 수준을 달성한 국가들의 부채지속가능성의 유지를 지원할 것이다.

95. 부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중한 관리는 포괄적인 국가재무전략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취약성 감소에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부채지속가능성과 신중한 공적 부채관리의 평가를 위한 분석도구를 더욱 강화하는 IMF, 세계은행, UN체계의 노력을 환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IMF-세계은행 부채지속가능성 평가는 적절한 차입수준을 알려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우리는 IMF와 세계은행이 UN 및 여타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개적이고 포용적인 과정으로 국가부채관리에 대한 분석도구를 계속해서 강화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채무국이 부채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여러 재원 간의 교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그들이 외부충격을 완화하고, 공공재정(Public financing)에 대한 꾸준하고 안정적인 접근을 보장토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을 권장한다.

96. 우리는 방법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공적 혹은 공적으로 보증된 국가부채 및 총 외부부채에 대한 데이터의 공공 이용가능성, 경제의 총대의 부채의무, 부채 데이터의 더 포괄적인 계간 발행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계속되는 활동을 환영한다. 우리는 관련 기관들이 재무조정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중앙 데이터 레지스트리의 구축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부채관리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

97. 우리는 채무국 및 채권국이 지속 불가능한 부채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반복한다. 지속 가능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채무국의 책임이다. 하지만, 우리는 채권국 또한 일국의 부채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빌려줘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국가 거래에 관한 UNCTAD 원칙에 주목한다. 우리는 IMF의 채무한도정책 및 세계은행의 비양허성 차입 정책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인식한다. OECD DAC은 협력국의 부채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계시스템에 새로운 보호조치를 도입했다. 우리는 부채지속가능성 평가가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정보공유 및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를 상기한다. 우리는 기존의 이니셔티브에 기반하면서, 국가에 의한 차입 및 국가에 대한 대출에 있어 채무국 및 채권국의 책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98. 우리는 채무조정이 시기적절하고, 질서정연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성의 있게 협상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단언한다. 우리는 국가부채위기의 워크아웃이 유리한 조건 하에서 자원조달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면서, 공적 부채지속가능성 회복을 목표로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성공적인 채무조정이 국가의 지속가능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채무조정의 시기 적절한 완료를 방해하는 능력을 보여줬던 비협조적 채권국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다.

99. 우리는 파리클럽(Paris Club of official creditors)⁴⁹⁾ 및 국제계약의 새로운 표준약관(standard clauses)의 시장수용성 등을 포함하여, 국가의무의 협력적 조정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강화 하는데 있어서 몬테레이 합의 이후 중요한 개선이 있어 왔음을 인식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집단행동 조항⁵⁰⁾이 없는 국제채(stocks of sovereign bonds)의 존재를 인정한다. 우리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공평한 책임분담을 가능하게 하며, 책임공유의 원칙을 준수하는 정돈되고 시기적절하며 효율적인 조정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분야 사이와 채무국 및 채권국 사이의 조화에 대한 합의를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IMF와 UN체계가 수행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작업에 주목한다. 우리는 부채이슈에 대한 채무국 및 채권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파

49) 파리클럽

채무국이 겪고 있는 지불 어려움과 관련,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그 역할이 있는 공식 채권자들의 비공식적 그룹이다. 채무국들이 그들의 거시경제 및 금융적 상황을 안정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개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파리클럽 채권국들은 채무 연장이나 일정 기간 동안의 채무 삭감을 통한 채무 조치를 제공한다. 파리클럽의 기원은 1956년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공공 채권자들과 파리에서 회담을 가진 것으로, 이후에 파리클럽은 90개 채무국과 431개의 협정에 도달하였다(2015). 1956년 이래 파리클럽의 프레임워크에서 다루어진 부채액은 5천8백3십억 달러에 달한다.

50) 집단행동조항(Collective Action Clause, CAC)

채권 소유자들 중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과반수가 동의하면 채무 재구성(debt restructuring)이 가능하도록 한다.

51) 파리포럼

파리포럼(Paris Forum)은 2013년 이후 파리클럽과 G20 국가 대통령이 교대로 개최하는 연간 행사로서 국가 재원마련 관련 글로벌 발전과 국가채무 위기 해결에 대한 솔직하고 열린 논쟁을 위해 채권국과 채무국 대표가 모이는 자리이다. 최근 파리포럼은 2014년 11월 20일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52) 국제자본시장협회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무역 협정, 자율규제기구로서 활동하며 그 회원국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국제자본시장협회의 회원은 발행인(issuers), 제 1, 2 금융시장, 자산관리자, 투자자, 자본 시장 인프라 공급자 등이다. 탄력적이고 충격에 잘 견디며, 제대로 작동하는 국제 부채 금융 시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소매, 판매자 및 소비자의 다양한 회원들과 활발히 일하며, 포괄적인 범위의 규제, 시장, 그리고 시장과 국제 부채 금융 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관련 이슈들에 초점을 맞춘다.

53) 보건 및 환경 스와프

보건 및 환경 스와프(DFNs)는 현지 통화로 이루어지는 보건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약속에 대한 대가로 채권국(개발도상국)이 가진 경화 부채가 채무국에 의해 탕감 및 삭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리클럽이 주도한 최근의 “파리포럼”⁵¹⁾ 이니셔티브를 인식한다. 우리는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개도국의 부채문제에 대한 항구적 해결을 향한 노력을 권장한다.

100. 우리는 다른 국가에 대한 더 큰 잠재적 함의를 고려해 볼 때, 부채위기 국가의 의무조정을 수락한 대다수의 채권소유자의 의지를 방해할 수 있는 소수의 비 협력적인 채권소유자의 능력에 대해 고심한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몇몇 국가들이 취한 법적 조치에 주목하고, 모든 정부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채이슈에 대한 UN 내에서의 토의에 주목한다. 우리는 협조하지 않는(holdout) 채권자에 대한 국가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한,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⁵²⁾가 제안하고 IMF가 지지한 단체행동조항과 그에 대한 개혁을 동일하게 환영한다. 우리는 특히 외국법 하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들이 그들의 모든 채권발행에 그러한 조항을 포함하게끔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한다. 우리는 최빈국에게 지원되는 법적 도움에 대한 재정지원 제공을 환영하며, 법률자문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신장시키는데 전념한다. 우리는 채무조정 이후에 채권자에 의한 소송에 대한 강화된 국제모니터링을 분석할 것이다.

101. 우리는 국내법 하에서 국내통화로 된 국제발행 증가와, 국가부채위기의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고 정돈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지침(Guiding principles)을 반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내법을 강화하는 국가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102. 우리는 심각한 자연재해와 사회, 경제충격이 일국의 부채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공적채권자들(Public creditors)이 지진 및 쓰나미 이후와 서아프리카 에볼라 위기의 맥락에서 채무상환재조정과 채무면제를 통하여 채무상환 의무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해온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적절한 곳에서 추가적인 부채탕감에 대한 사려를 권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 대해 실현 가능하도록 여타 조치에 대한 사려를 권장한다. 우리는 [보건 및 환경 스와프\(debt-to-health and debt-to-nature swaps\)](#)⁵³⁾ 경험에 주목하면서, 부채의 고통을 겪는 개도국 특히, 최빈국, 내륙국 및 소규모도서국을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에 대한 연구를 권장한다.

F. 시스템적 이슈 대응(Addressing systemic issues)

103. 몬테레이 합의에서는 세계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과, 개발 장려에 있어 UN의 리더십 역할 강화를 계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몬테레이 합의에서는 또한 개발을 지지하는 국제 금융, 통화, 무역체계의 일관성 및 연속성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몬테레이 합의 이후 우리는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을 고려할 필요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 모두에 걸쳐 정책일관성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점점 인식해왔다. 우리는 각 기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한편, 세계 경제 거버넌스를 개선 및 강화할 수 있고,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더 강력하고, 더 일관되고, 더 포용적이며 대표적인 국제질서에 이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국에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본국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청한다.

104. 2008년 세계 금융 및 경제위기는 금융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타당한 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세계금융 안전망의 긴요함을 강조했다. 우리는 몬테레이 합의 이후, 특히 2008년 위기 이후에 그 완료가 최우선순위인 개혁의 제에서 개도국 등을 포함하여, 세계 금융 혼란에 대한 탄력성을 구축하고 취약성을 감소하며, 세계금융위기의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환영한다. IMF 회원국은 IMF의 대출능력을 강화했고, 다자 및 국가개발은행은 위기 동안 중요한 경기조정의 역할을 하였다.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바젤 III**⁵⁴⁾ 및 더 개괄적인 금융개혁 어젠다 등 더 강력한 국가 금융규제를 통해 체계적 리스크(Systemic risks) 및 금융변동성(Financial volatility)을 감소하기 위해 협력하였다.

105. 규제적 차이(Regulatory gaps)와 조율되지 않은 장려책은 개도국에 대한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 위험 등 금융안정성에 계속해서 위험을 제기하고, 이는 국제 금융통화체계에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는 세계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제적 조화와 정책일관성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책결정이 국경을 넘어 개도국 등에 대해 전신효과(Systemic effects) 및 광범위한 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금융위기의 위험과 영향을 예방 및 감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금융체계 및 경제기관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안정성 및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추구하는데 전념한다. 크고 변동적인 자본흐름의 위험을 다룰 때, 필요한 거시경제정책조정(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과, 타당하다면 자본흐름관리 조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106. 우리는 국제경제의사결정 및 규범설정, 세계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개도국의 목소리와 참여의 확대 및 강화를 재차 회부한다. 우리는 IMF에서 계획된 재원증대 및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장애물 극복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IMF에 대한 2010년 개혁 실행은 최우선순위로 남아있고, 우리는 그러한 개혁에 대한 가장 빠른 비준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IMF 및 세계은행 모두의 추가적인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되풀이한다. 우리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⁵⁵⁾ 및 여타 주요 국제규제기

54) 바젤 III

바젤 III은 금융 분야의 규제, 감독, 그리고 위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에 의해 개발된 포괄적인 일련의 개혁 조치이다. 조치들은 금융 및 경제 압박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금융 분야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관리와 거버넌스를 증진하며, 은행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것이다.

55)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 건전성 규제를 위한 주요 국제 기준 설정 기구(standard-setter)이며, 금융 감독에 관한 정규적인 협력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금융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세계의 은행 규제, 감독, 실천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56) 농업시장정보시스템

2011년 G20의 농업부장관들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은 식량 시장 투명성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정책 과제의 조정 장력을 위한 기관 간 플랫폼이다. AMIS의 초기 중점은 국제 식량시장에서 특별히 중요한 4가지 작물(밀, 옥수수, 쌀, 대두)에 있다.

준설행 기관들이 개도국의 관심사가 고려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설정과정에 개도국의 목소리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요청한다. 주요국제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로서, 우리는 기관장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성별 균형적(Gender-balanced)이며 성과주의적인 선발에 전념하고, 직원의 다양화 향상에 전념한다.

107. 동시에, 우리는 영구적인 국제 금융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그 시스템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가진 강한, 할당량(Quota) 기반의 IMF를 유지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헌신한다. 우리는 올해 IMF에 의해 수행되는 5년 주기의 특별인출권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각 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금융 협정들 간 대화와 IMF와 지역 금융 협정들 사이의 강화된 협력을 장려한다. 우리는 관련 있는 국제 금융 기구들에게 거시 경제와 금융 위기에 대한 조기 경고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대해 IMF가 보다 종합적이고 유연한 금융 대응을 계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제 금융 기구들에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금융위기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도구(Instruments)를 개발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IMF에게 기구의 본래 임무와 관련,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국제 수지와 관련된 압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제 협약, 규범, 그리고 표준이 상호간에, 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을 향한 진전과 일관됨을 확실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개발 금융 기관들이 그들의 사업 관행을 Post-2015 개발 의제들과 합일화 할 것을 장려한다.

108. 우리는 식량과 농업에 관련된 상품 가격의 과도한 변동성과 이러한 변동성이 글로벌 식량 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리고 영양 개선 결과(Improved nutrition outcomes)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식품 시장과 그 파생상품들(Derivatives)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관련 있는 국제 기관들에게 상품 시장이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상품 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 아래, 시기 적절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시장 정보에의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가 주관하는 농업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⁵⁶⁾에 주목한다. 우리는 또한 영세 어업의 생산에 대해 가치를 부가한다는 이니셔티브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리의 실행(Sustainable management practices)에 따라, 작은 규모의 영세 어업 종사자들에게 해양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다.

109. 우리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⁵⁷⁾의 금융 시장 개혁에 관한 사업들을 주목하며, 거시 건전성 규제(Macroprudential regulation)와 역행 완충 장치(Countercyclical buffers)를 위한 우리의 프레임워크를 지속 혹은 강화시키는 데에 헌신한다. 우리는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시스템적 위험, 파생상품 시장, 증권 대여업, 그리고 환매 협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소를 포함한 금융 시장 규제에 대한 개혁 아젠다의 완성을 서두를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금융 기관들에 의해 생성된 ‘대마불사(too big too fail)’의 위험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기관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국가간 요소를 해결할 것을 밝힌다.

110. 우리는 규제를 포함한 신용등급기관의 평가에 대한 기계적인 의존을 줄이기로 결의한다. 등급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쟁을 강화하고, 신용등급 제공에 대한 이해 갈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와 다른 조직들의 공로를 인정한다. 우리는 신용등급기관들의 평가 기준에 더 강화된 투명성 조건을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유엔 내부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이 이슈를 열심히 추진할 것이다.

111. 우리는 국제 이주(International migration)가 주로 출신, 이동, 도착 국가에서의 개발과 관련된 다차원적 현실을 나타내며, 일관되고 종합적이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규칙적인 이주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획득한 수당에 대한 접근성과 휴대 가능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며, 외국의 조건, 교육과 기술, 이주자에 대한 낮은 고용 비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국가적 상황과 법체계에 의거하여 부도덕한 모집자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목적국에서 국가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외국인 혐오를 척결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시키며,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차원에서 이주자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효과적인 사회 소통 전략 도입에 힘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이주자,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 그들의 이주 상태와 상관없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권을 효과적으로 증진하며 보호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112. 우리는 국제 인권법에 의거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테러리즘과 범죄에 맞서 싸우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인신매매와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적, 국가적, 준국가적(Subnational) 기구들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돈세탁, 부패, 테러리즘에 대한 재정지원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국가 기관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 영역의 모든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제 협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⁵⁸⁾의 효과적 도입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한다.

57) 금융안정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금융시스템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국제 조직이다. FSB는 강력한 규제, 감독 및 기타 금융부문 정책 개발을 위해 일함으로써 국가금융권한당국과 국제표준설정 조직을 조정하여 국제금융안정성을 촉진한다. 또한, 여러 분야와 관할권을 아우르는 정책의 일관된 이행을 장려함으로써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한다. FSB는 회원들을 통하여 일함으로써 금융시스템 강화 및 국제금융시장 안정 증대를 추구한다.

58)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은 2000년 11월 15일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국제조직범죄에 대항하는 주요 국제 수단이다. 본 협약은 조직범죄의 구체적인 지역과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부속 의정서(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이민자 불법운송 방지 의정서(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Air and Sea); 총기류 불법제조 및 거래 방지 의정서(The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에 의해 보완된다.

113. 몬테레이합의(Monterrey Consensus)의 비전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상호간의 금융, 투자, 무역, 그리고 개발 정책과 환경 기관, 그리고 플랫폼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의무(Mandates)와 거버넌스 구조를 존중하면서 주요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를 결의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일관성과 국제 공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 연합의 포럼들을 더 잘 활용하는 데에 전념한다.

G. 과학, 기술, 혁신과 역량 강화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apacity-building)

114. 상호간에 합의된 조건에 의한 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노하우와 결합된 새로운 혁신과 기술의 탄생, 발전, 그리고 보급은 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강한 동력(Driver)이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국가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와 불평등한 혁신 역량, 연결성,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기술 접근성을 우려하며 주목한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빠르고 지불 가능한 가격의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의 발전과 활용을 특히 최빈국, 내륙개도국, 그리고 소규모도서국에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여성, 청년,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기술과 과학에의 접근성을 향상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115. 역량 개발은 Post-2015 개발 의제를 달성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 소규모도서국, 아프리카의 국가들, 분쟁 혹은 분쟁 후 국가들에서의 효과적이고 집중된(targeted) 역량강화를 위해 보다 강화된 여러 관계자들 사이의 파트너십의 구축과 그에 대한 강화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한다. 역량 강화는 반드시 국가 주도적이며,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을 해결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제도적 역량 강화와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재강조한다. 공공 재정과 행정, 사회 및 성 인지 예산편성(Social and gender responsive budgeting), 모기지 금융, 금융 제제 및 감독, 농업 생산성, 어업, 부채 관리, 도입과 완화를 목적으로 한 기획과 관리를 포함한 기후 서비스, 물과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들과 같은 영역 안에서 서의 국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116.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신기술 창조와 연구를 장려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공들여 설계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레벨에서 산업적 다양성과 부가가치상품에 더하여 마이크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과학 및, 혁신, 기술 보급 육성에 있어 규제와 거버넌스 체제를 포함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국

가차원에서 정의된 우선순위와 WTO 규율 전체에 의거한, 지적 재산권의 적절하고 균형 잡힌, 그리고 효과적인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기술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 자발적인 특허 풀(Patent pooling)과 여타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한다. 우리는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과 지속가능한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117. 우리는 정부, 기업, 학술계,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공헌하는 섹터 내 지식 공유와 협동, 그리고 파트너십 증진을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지원 활용 등을 통해 기업이 정신(Entrepreneurship)을 고취할 것이다. 우리는 열려있고 비 차별적인 규제 환경이 협력을 촉진시키며 우리의 노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기술 발전, 그리고 기술 거래 프로그램(Skill trading programmes)을 포함하여 상호 협의된 조건에 기반한, 특히 적절한 정책적 도움을 통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과 지식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 사적 영역 간의 연결을 강화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토착민들과 지역 커뮤니티의 전통적 지식, 혁신, 그리고 관습들이 사회적 웰빙과 지속가능한 생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우리는 토착민들이 그들의 문화유산, 전통적 지식, 그리고 전통 문화 표현을 유지, 통제, 보호, 그리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118. 우리는 또한 연구기술개발에서의 공공 재정과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공공 부문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공개적으로 자금조달된 프로젝트(publically funded projects)를 위한 연구에 대한 적절한 공개 접근(public access)을 위해 분투할 것이다. 우리는 필요한 곳에 연구, 개발, 입증(demonstration) 단계에 있는 혁신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열린, 경쟁적 기반의 혁신 자금을 마련(setting up)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공적, 사적 영역의 벤처 펀드들이 위험을 다양화(diversify)하며 성공적인 기업의 긍정적인 면을 포착하고자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접근법(portfolio approach)’의 가치를 인정한다.

119. 우리는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 전략을 지식 공유와 협력의 강화를 돕기 위한 우리의 국가적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필수적 요소로 도입하는 것에 결의한다. 우리는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여성과 소녀들의 동등한 접근을 확실히 하고 그들의 그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면서, 기술직업 및 대학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3차(tertiary)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온라인 교육 접근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59) 국가간해양위원회

국가간해양위원회(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IOC-UNESCO)는 UNESCO 내의 기능적 자발성을 가진 조직으로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UN시스템 내에 권한을 가진 유일한 해양 과학 조직이다. 위원회의 목적은 해양과 연안 지역의 본성과 자원에 대해 보다 많이 학습하고, 회원국의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 해양 환경 보호,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서비스 및 역량 강화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증진 및 계획 조정이다.

60) 해양 기술 이전에 관한 기준 지침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기준 지침(Criteria and Guidelines for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수립은 유엔해양법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 의해 증진되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관심과 수요를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2003년 국가간해양위원회 총회에서 채택하였으며, 기준 원칙은 해양 기술의 이전은 항상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과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해양과학 관련 활동의 개발, 특히 개도국의 사회 경제 맥락을 고려하는 개발로부터 공평한 기준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20. 우리는 상호가 동의한 특혜적 조건을 포함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이 개발도상국으로의 개발, 보급, 유포, 그리고 이전되는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공공 및 민간(Public and private), 그리고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협력 등을 통하여, 또한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성취에 초점을 둔 공동의 이익과 상호 이익에 기반하여 과학, 연구, 기술과 혁신협력과 공동작업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에 관한 10년 계획(the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의 실행을 통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패턴을 향해 움직이기 위해 그들의 과학,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이 영역에서 특히 최빈국, 내륙개도국, 소규모도서국,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ODA를 포함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남-남 협력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국제 협력의 실현을 장려한다.

121. 우리는 백신과 의약품의 연구와 개발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 조치와 치료(treatment)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접근성을 확장함과 동시에 혁신을 장려하는 백신 연합(Vaccine Alliance) Gavi와 같은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이다. 식량 안보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개발 도상국에 의한, 특히 최빈국에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을 발전시키는 등 농업 생산 역량 증진을 통한 지면(earth) 관측, 농촌 개발, 농촌 지원, 그리고 기술 발전에서의 강화된 국제 협력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확대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가간해양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⁵⁹⁾의 해양 기술 이전에 관한 기준 지침(Criteria and Guidelines on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⁶⁰⁾을 고려하여, 바다의 건강을 개선하고, 특히 소규모도서국과 최빈국을 위한 해양 생물 다양성에 대한 공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을 증대하고,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며, 해양 기술을 이전할 것이다.

122. 우리는 과학기술위원회(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유엔 기후변화협약 하 기술 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기술센터와 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의 자문 서비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역량 강화, 그리고 유엔산업개발기구 국가청정생산센터의(UNIDO 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res)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과학, 기술, 그리고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 계획(work programmes) 증진을 위한 관련 과학, 기술, 그리고 역량 강화를 개발 및 유포시키는 기술 집약적 임무를 가진 국제연합 시스템의 전문화된 기구, 기금, 그리고 프로그램을 요청(invite)한다. 우리는 이중적 노력을 제거하려는 시각을 가지고 국제연합 시스템 내의 과학 및 기술 이니셔티브들 사이의 일관성과 시너지를 강화하며 이 영역에서의 현존하는

많은 성공사례를 인식하는 일에 전념한다.

123. 우리는 기술촉진메커니즘(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을 확립할 것을 결정한 다. 이 메커니즘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지원할 목적으로 열리는 Post-2015 개발 의제의 도입을 위한 유엔 정상회의에서 출범될 것이다.

- 우리는 기술촉진메커니즘이 회원국, 시민사회, 민간부문, 과학계, 유엔 조직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다수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에 기반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에 관련한 유엔 기관 간 업무 팀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혁신과 관련한 다수 이해관계자 협력 포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성될 것을 결정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에 관련한 유엔 기구간 태스크팀(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team)은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 유엔 시스템 안에서 시너지와 효율성, 특히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를 강화시키기 위해, 조화, 일치성, 그리고 협동을 촉진할 것이다. 태스크팀은 현존하는 자원에 의존할 것이며, 열 명의 시민사회, 민간부문, 과학계 대표들과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에 관한 다수 이해관계자 포럼과, 포럼과 온라인 플랫폼의 양식에 대한 제안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과 조직화 대비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다. 열 명의 대표들은 2년 단위로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지명될 것이다. 태스크팀은 유엔 기관, 기금, 그리고 프로그램의 참여와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기능 위원회에 대해 열려있을 것이며, 초기에는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을 포함한 개발 회의기술 촉진에 관련한 비공식적 작업반을 형성하는 기관들로 구성될 것이다.
- 온라인 플랫폼은 유엔 시스템 너머에 현존하는 과학, 기술, 혁신 이니셔티브와 메커니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그리고 그로 향하는 관문으로 기능하는, 종합적인 맵핑(mapping)으로 사용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정보, 지식, 그리고 경험뿐 아니라 과학, 기술, 혁신 촉진 이니셔티브와 정책에 관한 성공 사례와 교훈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또한 전 세계의 과학 출판물에 관련된 오픈 액세스의 보급을 촉진시킬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첩을 피하고 시너지를 강화하면서 현존하는 과학, 기술, 혁신 플랫폼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완 및 용이하게 하며, 그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UN 안팎에서 다른 이니셔티브를 통해 얻은 성공 사례들과 교훈을 고려한 독립적인 기술평가에 근거해 개발될 것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에 관한 다수 이해관계자 포럼은 모든 관련 있는 이해 관계자들이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활발히 공헌하도록 모아 과학, 기술, 혁신 협력 주변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도입과 관련한 주제 영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일 년에 한 번, 이를 동안 개최될 것이다. 포럼은 과학 협력, 혁신, 그리고 역량 강화를 포함한 기술 수요(needs)와 격차를 명확히 하고 조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관련 기술의 전달과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다수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간 상호작용, 매치메이킹(matchmaking), 그리고 네트워크를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포럼 내 회담들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위급 정치 포럼의 회담들, 혹은 이 대신에 다른 포럼이나 컨퍼런스와의 협력을 통하여 그곳에서 고려되는 주제를 참작하고, 그 주최자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회담들 이전에, 경제사회이사회 의장(president)에 의해 소집될 것이다. 회담들은 두 회원국이 공동 의장을 맡을 것이며, Post-2015 개발 의제의 실행 후속조치와 검토의 맥락에서 고위급 정치 회담에 대한 투입 요소로서 두 공동 의장에 의해 논의가 요약될 것이다.
- 고위급 정치 포럼 회담들은 다수 이해관계자 포럼의 요약문에 영향을 받을(informed) 것이다. 차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에 관한 다수 이해관계자 포럼의 주제는 작업팀의 전문적 조언에 의거해 고위급 정치 포럼에 의해 고려될 것이다.

124. 우리는 제안된 기술 은행과 최빈국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 역량 강화 메커니즘의 의 실행 가능성과 조직적, 작동적 기능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Technology Bank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관한 고위급 패널의 권고 조치(recommendations)를 고대한다. 우리는 고위급 패널의 권고조치들을 제시된 은행의 범위, 기능, 제도적 연계, 그리고 조직적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며, 2017년까지의 운용을 목표와 함께 기술촉진메커니즘과의 시너지 촉진을 추구할 것이다.

III. 데이터,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125. 양질의 세분화된 데이터는 post-2015 의제와 도입 수단에 대한 지원 과정을 포함하여, 현명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투입 요소이며 모든 레벨에서 정책 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오픈 데이터를 포함한 질적, 양적 데이터, 그

리고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통계 시스템과 행정에 대한 초점은 전 지구적 파트너십 내에서의 국내 역량,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히 중요해질 것이다. 국가 통계 시스템들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세분화하며 관리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들은 반드시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민간부문으로부터의 데이터와 분석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126. 우리는 성별, 나이, 지리, 소득, 인종, 민족, 이주 상태, 장애, 그리고 국가별 맥락과 관련된 다른 특성들에 의해 세분화된 시기적절하며 신뢰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의 증가와 활용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한 최빈국, 내륙개도국, 그리고 소규모도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을 진작하고, 국가의 통계 관련 당국과 부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국제 협력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기관들의 국내 및 국제적 자원 동원과 소비에 관련한 데이터와 다른 실행 수단에 관한 데이터를 강화하고 표준화 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모든 실행 수단을 위한 개선된 통계 지표에 대한 제안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관련 국제 통계 서비스 및 포럼과 일하는 통계 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에 모든 현존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하는, 강화된 모든 국가간 재정조달 및 다른 경제적인 금융 흐름에 대한 데이터 추적력을 촉진할 것과,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 도입과 관련한 국제 통계의 타당성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고를 요청한다.

127. 우리는 보다 높은 투명성이 필수적이며 개발 활동(activities)에 관한 시기적절하고 종합적이며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를 공통의, 공개적인, 전자 방식으로 적절히 발표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신뢰할만한 데이터와 통계는 정부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게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진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균형을 이해하며 상호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현존하는 투명성 이니셔티브와 공개 데이터 표준(open data standards)으로부터 학습하고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에 주목할 것이다. 우리는 Post-2015 개발 의제에 대한 국가적 주인의식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필요와 지원을 연결함으로써 더욱 높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우선순위 영역에서의 국가 수요 분석(Country needs assessment) 준비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한다.

128. 그러나 데이터 접근성 단독으로는 데이터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달성, 모니터링, 그리고 리뷰 모두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기에 불충분하다. 우리는 반드시 데이터를 유용한, 실용적인 정보로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도구들에 대한 넓은 접근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출처로부터의 정보들을 보다 쉽게 비교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운용이 가능한 데이터 표준을 만드는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된 공적,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게 Post-2015 개발 의제에 대한 지지로서, 전 지구적 데이터 해독력(literacy), 접근성, 활용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129. 우리는 나아가 유엔 시스템에, 국제 금융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전에 대한 1인당 소득을 넘는, 적절한 기존의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투명한 측정 지표를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이 지표들은 반드시 빈곤을 모든 형태와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 생산과 구조적 격차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차원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류화 시키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 파급효과를 모니터 하기 위한 도구들의 개발과 도입을 추구할 것이다.

130. 후속조치 및 검토를 위한 메커니즘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실행 수단의 획득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발 결과에 대한 자금 조달과 모든 Post-2015 개발 의제의 시행 수단의 후속조치를 확실히 하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개입에 전념한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관계 정부 부처, 지방 정부 당국, 국회, 중앙은행과 금융 규제 당국과 더불어 주요 국제 이해관계자, 다른 국제 개발 은행들, 그리고 다른 관계 기관들, 시민 사회, 학계, 그리고 사적 영역의 참여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행동 지침(Action Agenda)의 주제와 관련된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전문지식과 현존하는 메커니즘을 동원하기 위하여 지역 은행, 조직과 협력하는 국제 연합의 지역 위원회를 장려한다.

131. 우리는 유엔의 개발 후속 조치에 대한 재정 지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재정 지원과 Post-2015 개발 의제의 이행 수단의 연결고리를 인식하며, 개발 성과에 대한 재정 지원과, Post-2015 개발 의제의 도입을 위한 유엔 정상회의(United Nations summit for the adop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서 의결될, 통합된 Post-2015 개발 의제의 도입 수단에 대한 심사 숙고된 후속조치와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후속 절차는 진척 사항(progress)을 평가하고, 개발 결과에 대한 재정 지원의 도입과 실행 수단의 전달의 장애물과 어려움을 판별하며,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의 경험을 통한 교훈의 공유를 증진하고, 필요의 증가에 따른 해당 의제의 도입과 관련한 새로운 주제들을 다루며, 국제 사회의 행동(action)에 대한 정책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 연합 프로세스의 조정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촉진하며, 논의의 중첩을 지양할 것이다.

132. 우리는 현존하는 제도방식을 활용하며, 이사회의 현재 사이클 중에 시행될 일반적인, 정부 간 참여를 통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개발 후속 조치를 위한 재정 지원 연례 포럼을 포함하는 헌신되고 강화된 후속조치

를 통하여, 이 중요한 의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포럼의 참여 양식은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될 것이다. 포럼은 5일간 개최되며 그 중 하루는 브레튼우즈 체제기관들과 WTO, 그리고 UNCTAD 뿐 아니라 회담의 우선순위와 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기관 및 여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 고위급 회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대 4일은 개발 결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후속조치와 검토, 그리고 Post-2015 개발 의제의 이행 수단에 대한 논의에 할애될 것이다. 포럼에서 정부 간에 합의된 결과와 권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위급 정치 포럼의 Post-2015 개발 의제의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후속조치와 검토에 반영될 것이다. 개발협력포럼(Development Cooperation Forum)의 그 의무에 따른 심의 [사항] 또한 고려될 것이다. 유엔 총회 개발 재원 고위급 회담(High-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of the General Assembly)은 4년마다 열리는 고위급 정치 포럼에 연이어 유엔 총회의 지원으로 열릴 것이다.

133.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보다 강화된 후속 절차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그 의무가 새천년개발목표 격차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Millennium Development Goals Gap Task Force)에 대한 후속 조치와 경험 구축에 관련이 있는 주요 기관의 이해관계자들과 기금, 프로그램, 전문기관을 포함한 유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기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소집할 것을 장려한다. 이 합동 태스크포스팀은 개발 결과에 대한 재정 지원 도입의 진행 상황과 Post-2015 개발 의제 도입의 수단에 대해 해마다 보고하며,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고려를 통하여 정부 간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 실행 격차(implementation gaps), 그리고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s)를 위한 권고 사항에 대해 조언한다.

134. 우리는 2019년 내 후속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

*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CONF.227/L.1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 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